



2015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결과자료집

2015 · 3

일자 : 2015년 2월 10일

장소 : 자카르타 술탄호텔, 그랜드볼룸A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AICHR-Indonesia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프로그램

- 개최일시 : 2015년 2월 10일(화), 11:30~18:05
- 개최장소 : 술탄호텔 자카르타 (Sultan Hotel Jakarta), 인도네시아
- 주 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방안
 - 1세션 :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2세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방안
- 주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인도네시아 과학원 (LIP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
 -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Komnas HAM,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donesia)
 - AICHR 인도네시아 대표부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사용언어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시 간	내 용
11:30~12:00	참가자 등록
12:00~13:00	오찬
13:00~13:30 (30분)	개회식 - 사 회 : 심상돈 (정책교육국장), Dian Anshar (AICHR-Indonesia) - 개회사 : 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② Iskandar Zulkarnain (인니 과학원장) ③ Hafid Abbas (인니 인권위원장)
13:30~13:45	- 기념촬영, 회의실 정리 등
13:45~14:15 (30분)	기조연설 -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시 간	내 용
14:15~15:55 (100분)	1세션 :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사회 :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 발제 ①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 COI보고서에 나타난 반인도범죄를 중심으로 ② Adriana Elisabeth (인니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 아시아지역의 반인도범죄 사례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 ① 홍성필 (연세대 교수) ② 백범석 (경희대 교수) ③ Mangadar Situmorang (Parahyangan 대학교 정치사회대학원장) ④ Adriana Venny Aryani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상임위원)
15:55~16:15	coffee break
16:15~17:55 (100분)	2세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 - 사회 : M. Riefqi Muna (인니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발제 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 협력 방안 ② 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 : 동남아 지역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안 제안 - 토론 ①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② 이정훈 (인권대사) ③ Ani Widayani Soetjipto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조교수) ④ Haris Azhar (KontraS 코디네이터)
17:55~18:05 (10분)	폐회사 - 유명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PROGRAM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Host : NHRCK(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IPI (Indonesia Institute of Sciences)
Komnas HAM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donesia)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 Date : 10 February, 2015(Tue), 11:30~18:05
- Venue : Sultan Hotel Jakarta, Golden Ballroom A
- Language : Korean, Indonesian, English

Time	Contents
11:30~12:00	Registration
12:00~13:00	Lunch
13:00~13:30 (30분)	Opening Ceremony – Moderator : Shim, Sang-don (Director-general of the NHRCK) Dian Anshar (AICHR-Indonesia) Opening remarks : 1. Hyun, Byung-chul (Chairperson of the NHRCK) 2. Dr. Iskandar Zulkarnain (Chairman of LIPI) 3. Dr. Hafid Abbas (Chairperson of Komnas HAM Indonesia)
13:30~13:45	Commemorative photo session
13:45~14:15 (30분)	Keynote Speech : Marzuki Darusma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human rights in the DPRK)
14:15~15:55 (100분)	Session 1 :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Crimes Against Humanity – Moderator : Ra, Jong-yil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of Hanyang Univ.)

PROGRAM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ime	Contents
14:15~15:55 (10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t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won, O-gon (Judg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Focusing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COI report 2. Dr. Adriana Elisabeth (Head of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LIPI) : Focusing on cases in Asia and proposal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 Panels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ong, Seong-phil (Professor of Yonsei Univ.) 2. Baek, Buhm-suk (Professor of Kyunghee Univ.) 3. Dr. Mangadar Situmorang (Dean of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Parahyangan Univ.) 4. Adriana Venny Aryani (Plenary Commission Member of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an)
15:55~16:15	coffee break
16:15~17:55 (100분)	Session 2 : Measure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 Dr. M. Riefqi Muna (Senior Researcher at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LIPI) - Present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im, Kwang-ji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Focusing on measures of reg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2. Rafendi Djamin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ICHR) : Focusing on how to approa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genda in South East Asia countries - Panel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Yoon, Nam-geun (Commissioner of NHRCK) 2. Lee, Jeong-hoon (Human Rights Ambassador of Korea) 3. Ani Widayani Soetjipto (Senior Lecture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Indonesia) 4. Haris Azhar (Coordinator of KontraS)
17:55~18:05 (10분)	Closing Rem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o, Yeong-h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HRCK)

목 차

● I. 심포지엄 자료	1
1. 개회사 / 3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3	
Hyun, Byung-Chul (Ketu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 7	
2. 기조연설 / 11	
Marzuki Darusma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13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17	
3. 1세션(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21	
발제: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 23	
Kwon, O-gon (Judg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29	
발제: Adriana Elisabeth (인니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 37	
Dr. Adriana Elisabeth (Head of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LIPI) / 47	
4. 2세션(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 / 57	
발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59	
Kim, Kwang-jin (Lembaga Penelitian Strategi Keamanan Nasional) / 65	
발제: 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 / 73	
Rafendi Djamin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ICHR)	

목 차

토론: **Ani Widayani Soetjipto** (Senior Lecture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Indonesia) / 81

Ani Widayani Soetjipto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조교수) / 87

Haris Azhar (Coordinator of KontraS) / 91

Haris Azhar (KontraS 코디네이터) / 95

● II. 회의록 97

1. 기자간담회 / 99

2. 개회식 / 106

3. 기조연설 / 115

4. 1세션 / 116

5. 2세션 / 144

6. 폐회사 / 163

● III. 참고자료 167

1. 패널 프로필 / 169

2. 행사장 사진 / 178

3. 국내 주요 언론 보도 / 183

4.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 192



개 회 사

Pidato Pembukaan Acara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Hyun, Byung-Chul (Ketu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개 회 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본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도네시아 과학원,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COI조사보고서 발표 1주년 행사 및 3월 유엔인권 이사회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전 세계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이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구체적 행동의 차원을 나누어 접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원입니다. 인권의 개념과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역사를 통해 축적하고 합의해온 보편적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치적·사회적 특수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인권의 개념과 기준을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적용한다면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자리매김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인권개념과 기준이 국제사회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때로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위험성도 갖고 있고, 사회 다수집단에 의해서 소수집단의 인권이 침해되기 쉽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은 항상 국가 권력과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하고 다수보다는 소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와 활발한 인권대화와 교류를 통해 인권개념과 기준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차원입니다. 이것은 대상과 주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북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시아라는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의 근본적 주체는 북한당국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의 개선 주체가 될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저는 남과 북이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북한과 인권 대화 및 협력을 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남북한 간 인권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통일 후 남북 간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의 중심국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

루어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남북한 간 인권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 탈북자 인권문제를 아세안의 의제로 채택되도록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지역적 접근 방식의 하나로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해당 국가 스스로 또는 양자 관계를 통한 해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단위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모임인 아시아 태평양 포럼(Asia-Pacific Forum, APF)이 있고, 10개 아세안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시아지역 단위의 인권기구나 협의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의 탈북자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인신매매 등의 인권문제는 국가 간 또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을 모두 포괄하는 아시아지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포함된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가 설립된다면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차원의 인권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 두 번째 세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14년은 COI보고서 발표 및 유엔인권이사회 채택,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및 북한인권 상황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정식 의제 채택 등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일련의 진전된 과정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언젠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너무도 단단

하고 두꺼운 얼음 속에 갇혀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얼음을 조금씩 녹여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Pidato Pembukaan Acara

Hyun, Byung-Chul

(Ketu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Selamat pagi/siang/sore?

Saya Hyun Byung Chul ketu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Pertama tama saya mengucapkan terimakasih kepada Komisi Hak Asasi Manusia Korea Selatan dan sponsor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Komisi Hak Asasi Manusia Indonesia, Perwakilan Indonesia Komisi Antar-Pemerintahan ASEAN Hak Asasi Manusia yang telah menyelenggarakan acara ini dan telah bersimpati untuk memperbaiki Hak Asasi Manusia Korea Utara.

Tambahan lagi saya berterimakasih kepada yang sudah berpartisipasi untuk hadir hari ini para pejabat pemerintah Indonesia dan Akademis, Aktivist LSM, juga para diplomat dari seluruh negara.

Dan saya sangat berterimakasih kepada Pelapor Khusus PBB HAM Korea Utara bapak Marzuki Darusman yang akan membawa pidato utama hari ini meskipun beliau sibuk karena ada acara ulang tahun pertama perilisian laporan penelitian COI yang diselenggarakan di Washington minggu depan dan pertemuan dengan Dewan Direktur HAM PBB bulan Maret

Para hadirin!

Untuk situasi kejahatan Hak Asai Manusia Korea Utara tidak perlu lagi kita bicarakan karena seluruh dunia sudah mengetahuinya. Oleh karena alasan itu kita berkumpul disini untuk mencari solusi praktis memperbaiki HAM Korea Utara.

Untuk meningkatkan HAM Korea Utara saya pikir kita perlu pendekatan dan

pembahasan untuk Dimensi Kesadaran HAM dan Dimensi Tindakan Spesifik.

Pertama dimensi kesadaran tentang HAM. Konsep dan dasar HAM harus sesuai dengan prinsip-prinsip umum yang telah disepakati dan dikumpulkan oleh umat manusia lewat sejarah. Setiap negara mempunyai sejarah dan budaya yang unik, kekhususan politik dan sosial, tetapi kalau dengan alasan ini definisi konsep dan dasar HAM diterapkan dengan berbeda di setiap negara, HAM mengalami kesulitan untuk mendapatkan tempat sebagai nilai universal umat manusia sebagaimana yang diharapkan oleh PBB

Musim gugur tahun lalu saya menegaskan bahwa sangat berbeda konsep dan dasar HAM Korea Utara dengan masyarakat Internasional yang diungkapkan melalui laporan Asosiasi Studi HAM Korea Utara. Negara wajib menjamin HAM warga negara, tetapi kadang kadang juga memiliki risiko penganiayaan terhadap HAM rakyat dan kemungkinan sudah tahu bahwa HAM sekelompok minoritas muda dilanggar oleh sekelompok mayoritas sosial. Oleh karena itu HAM selalu dipertimbangkan secara terpisah dari kekuasaan negara dan fokusnya harus minoritas dari pada mayoritas, Individu dari pada kelompok

Karena itu saya berharap mulai sekarang Korea Utara membentuk konsensus dengan masyarakat Internasional tentang konsep dan dasar HAM melalui dialog yang aktif dan pertukaran dengan masyarakat Internasional. Saya pikir ini akan menjadi titik awal yang benar untuk memperbaiki HAM Korea Utara.

Selanjutnya dimensi Tindakan Spesifik untuk memperbaiki HAM Korea Utara. Hal Ini akan dibahas dengan cara yang sangat berbeda, tergantung pada subjek dan topik, tetapi hari ini saya ingin mengusulkan pendekatan dari Korea Utara Indonesia, negara atau unit lokal asia.

Pertama, Inti dasar memperbaiki HAM Korea Utara adalah pemerintahan Korea Utara. Pemerintah Korea Utara adalah pelanggar HAM para warga Korea Utara, tetapi pada saat yang sama meningkatkan HAM Korea Utara yang medasar dan praktis kalau pemerinta Korea Utara menjadi Inti utama perbaikan HAM Korea Utara. Jikalau Korea Utara sendiri tidak mau berubah, jelas ada keterbatasan didalam memperbaiki HAM KoreaUtara, dalam hal ini saya berharap Selatan dan Utara bekerja sama dan berkompetisi untuk meningkatkan HAM dan

kesejahteraan masyarakat. Hal ini akan mengurangi perbedahan antara kedua Negara Korea dan juga sangat penting untuk mempersatukan kehidupan sosial yang harmonis setelah penyatuan Korea Utara dan Korea Selatan.

Kedua, Indonesia dengan penekanan demokrasi dan HAM sekaligus berkembang perekonomian di tengah kawasan ASEAN, akan menjadi peran yang sangat penting dalam memperbaiki HAM Korea Utara. Indonesia dianggap mampu memberikan kontribusi untuk meningkatkan HAM Korea Utara melalui koordinator dialog HAM diantara Korea Utara dan Korea selatan dan dialog HAM Korea Utara sebagai negara persahabatan Korea Utara dan Selatan.

Selain itu dimungkinkan untuk menunjukkan supaya dipilih menjadi agenda ASEAN dalam bahasan masalah HAM pengungsi Korea Utara kawasan ASIA TENGGARA.

Ketiga, saya ingin mengusulkan untuk memperbaiki HAM Korea Utara dengan cara pendekatan regional yang komprehensif dengan mendirikan lembaga HAM tingkat kawasan ASIA atau pembentukan consultaive organization. Karena ada keterbatasan jika diselesaikan melalui negara sendiri atau hubungan nasional masalah HAM masing masing negara, maka akan lebih efektif diselesaikan melalui kerja sama multilateral regional. Saat ini di kawasan ASIA ada Asia-Pacific Forum, APF yang pertemuan lembaga HAM kawasan ASIA Pasific,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yang membentuk komisi ASEAN HAM antar-pemerintah ASEAN dengan terdiri 10 negara komisi ASEAN. Namun masih belum ada lembaga HAM atau consultaive organization unit kawasan ASIA. Masalah HAM Bukan hanya masalah HAM pelarian China, Thailand, Laos, Myanmar, serta pengungsi, HAM pekerja migran, perdagangan budak karena merupakan masalah yang terjadi dan harus diselesaikan di tingkat nasional atau regional, perlu didirikan lembaga HAM atau consultaive organization tingkat kawasan ASIA bukan hanya ASIA Tenggara tapi meliputi Korea Selatan, Korea Utara, Jepang, China.

Kalau membentuk lembaga HAM di tingkat ASIA yang melibatkan negara-negara ASIA Timur seperti China, Korea, Jepang yang merupakan pangsa penting dari ekonomi dunia yang tentunya akan memberikan kontribusi untuk meningkatkan HAM bukan hanya di ASIA tapi di tingkat dunia. Saya berharap

di sesi kedua hari ini akan terjadi diskusi yang terkait dengan ini secara khusus dan produktif.

Bapak Ibu yang terhormat!

Di tahun 2014 adalah tahun yang banyak kemajuan dari pada tahun sebelumnya secara Internasional terhadap masalah HAM Korea Utara yaitu presentasi laporan COI, Pemilihan Komisi HAM PBB, Pemilihan resolusi HAM Korea Utara sidang umum PBB, mengirim dan pemilihan Dewan keamanan PBB dan dll.

Selain itu ditahun ini pada bulan 3 dijadwalkan penempatan office HAM Korea Utara PBB di Seoul. Saya yakin dengan kerja keras masyarakat dan serangkaian kemajuan proses menjadi pesan pengharapan dan penghiburan bagi masyarakat Korea Utara dan yang suatu hari nanti akan berperan memperbaiki HAM Korea Utara.

Meskipun HAM masyarakat Korea Utara terperangkap didalam es yang begitu keras dan tebal. Perhatian dan upaya kami yang berdiri di tempat ini akan melelehkan es itu sedikit demi sedikit.

Sekali lagi saya terimakasih kepada seluruh team yang bekerja sama serta seluruh hadirin yang hadir sehingga Symposium ini bisa berjalan dengan baik dan saya berharap kedepannya bisa bergabung dengan komisi kami untuk memperbaiki HAM Korea Utara.

Terimakasih.

2015. 2. 10.

Ketua Komisi Nasional HAM

Hyun, Byung-Chul



기 조 연 설

Keynote speech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Marzuki Darusma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eynote speech



Marzuki Darusma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uesday 10 February 2015, Jakarta, Indonesia

Excellencies,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Let me begin by thank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Indonesia and the Indonesia Institute of Sciences for hosting today's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t is a pleasure for me to take part in this important symposium as it represents a great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what has been achieved late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address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what lies ahead of us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2014 has indeed been a critically important yea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llective engagement on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our efforts to bring relief and justice to its long-suffering people.

On 17 Februar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of which I was a member, launched its report and submitted i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mandated by the highest intergovernmental body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documented and concluded that a number of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in the DPRK met the high threshold requir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In March, the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resolution 25/25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calling upon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United Nations bodies,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in its report. No Member State speaking 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th the exception of the DPRK, denied tha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had to be addressed.

In May, the DPRK participated in its second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ccepting few months later 113 recommendations out of the 268 made, and also updating its position o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review.

In October,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my mandate in 2004, I met a delegation of senior DPRK officials in the margins of the 69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They invited me to undertake a full-fledged country visit in the near future, under some conditions which were subsequently not met. Indeed, in December,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with an overwhelming majority- a landmark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paving the way for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by the Security Council, including a possible referral of thi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same month, the Security Council met to discuss such situation, with considerable

focus on the issue of abductions. While no specific outcome was intended at this stage, the situation in the DPRK is now firmly placed on the Council's agenda.

It is therefore fair to say that there were more developments in relation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 the past year than since the establishment of my mandate a decade ago. These promising developments were made possible thanks to the sustained efforts over the years by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Member States, but also the civil society as a whole, to mak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ware of th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In March 2015,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consider the adoption of a new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is will be another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press its dismay about this situation, and reiterate its resolve to put an end to the on-going violations in the DPRK and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In the framework of this forthcoming Council sess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I will present the main elements of a multi-track strategy aimed at solv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I hope to be able to count on the support of all stakeholders in the region, and beyon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strategy.

More generally,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tress the key rol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uld continue playing in seeking truth and justic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DPRK. They should actively join forces in a common effor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decisively bring closure to

the on-going tragedy. In this endeavou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should be seen as close allies by empower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mplifying their voice in all fora.

Let me point out that the United Nations system as a whole also has a key role to play in alleviating the plight of the people of the DPRK. I wish to reiterate my hope that all par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will rise to the challenge to work and deliver in a coordinated and unified manner a “Rights up Front” approach. In this context, I look forw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HCHR field-based structure in Seoul, Republic of Korea, task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with following up the work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his office will start operating as of next month. During my recent visi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 was pleased that all interlocutors with whom I met expressed their readiness to collaborate with this office. It is crucial that all stakeholders from the region support its future important work.

It is more than ever essential at this key juncture that we redouble our efforts to effect meaningful changes in the DPRK in addressing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We owe it to all the victims and their relatives who have endured enough suffering.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wish you a fruitful discussion today.



기조연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2015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외귀빈여러분,

먼저 오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해주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도네시아 과학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동향과 향후 상황에 대해 논의해보는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공조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북한 주민들의 괴로움을 덜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가 속해있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정부간 최고 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 (UNHRC)에 제출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발족한 조사위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문서화했으며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기구를 비롯한 모든 당사국이 조사위의 권고를 이행할 것

을 촉구하는 제25차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5월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여한 북한은 제기된 263개 권고안 중 113개를 수개월 후 수용했으며, 이전 검토사항 일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고위당국자로 구성된 대표단과 2004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12월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기념비적인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같은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북한 인권실태가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특별보고관직이 설치되었을 때와 비교해 북한 인권문제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이는 지난 수년 간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히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고 덕분입니다.

2015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것입니다. 새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북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타파하겠다는 결심을 재차 다짐하며, 인권침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유엔인권이사회 차기 정기회의에서 조사위의 권고사항 가운데 북한 정권의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화된 전략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역내외 모든 당사국이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를 빌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간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비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공조가 요구됩니다. 특히 민간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면면에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 인권위원회의 긴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곤궁을 완화하는 데는 유엔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모든 유엔 기구가 합심하여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요청 하에 조사위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기능을 담당할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무조직은 다음 달 개설했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모든 분들이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몹시 흡족했습니다. 역내 모든 이해당사자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현장사무소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해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인권유린 희생자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국제사회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션 : 반인도 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발 제



COI보고서에 나타난 반인도범죄를 중심으로
Focusing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COI report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Kwon, O-gon (Judg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원문>

COI 보고서와 북한 반인도범죄에 관한 소고(小考)

ICTY 재판관 권오곤

1.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심포지엄에 귀한 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과학원 및 인권위원회 등 주최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제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이하 “ICTY”)의 재판관이고 한편으로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은 ICTY 나 유엔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3.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폭로하거나 고발한 증언, 책, 언론 기사, 다큐멘터리, 논문, 사진, NGO 의 보고서들 등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저는 이번에 나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또는 “위원회”)의 보고서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서 설치되고, 기능적으로도 독립성을 보장받은 COI 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그 신뢰성과 권위의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인정받을 것이고, 비단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전반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과 도전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확신합니다.
4. COI 보고서의 내용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님께서 이미 잘 설명해주셨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개인적인 소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 먼저 지난 14 년간 국제형사재판에 참여해 온 재판관의 입장에서, 북한에서의 인권관련 범죄가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상정하였을 때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첫 재판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사건은 4 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망으로 결실을 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재판이 끝나고 말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라도반 카라지치 사건도 예상대로 올해 10 월말에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면, 첫 증인신문을 시작한 이후 재판이 끝나는 데까지 4 년 반 가까이 걸리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기소하는 공소사실이나 그 배경이 되는 사실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로세비치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밀로세비치 한 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발칸반도에서 10 년에 걸친 세 번의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 행위 전체를 기소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건이 아니라 사실상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하는 것과 같은 입증과 방어 및 판단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저는 북한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을 준비할 경우에도 세세한 모든 사실이나 배경이 아니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다음으로, 관련 증인의 진술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전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유엔 산하의 다른 많은 사실조사기구(fact-finding bodie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OI 도 그 보고서에서 사실 인정을 위한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 기준에 근거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¹ 이에 비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의 기준은 그보다 더 나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beyond reasonable doubt)”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백 명의 진범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입증이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8. 따라서 증인의 진술을 수집하고 보전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¹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February 2014, UN Doc. A/HRC/25/CRP.1, paras. 67-68.

혐의나 증거에 대해서 재판관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피해자의 증언을 채집하는 경우에 유도 신문이나 편집을 하면 증명력이 떨어지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을 정보기관 등이 수집한 기존의 정보에 합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정 단체의 어젠더에 끼워 맞춘 증언이나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해서 출간한 책의 경우도 충분한 증명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9. 언젠가 어떤 단체가 어떤 나라에서 탈북자를 증언자로 불러놓고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우연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기자들 앞에서 긴장해서인지 말을 더듬거나 기존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할 때 옆에서 통역을 겸했던 주최자가 그 사람의 예전 진술에 기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수정해주거나 그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던져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외국기자들이 그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그 자리에서의 그 증언을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이 열렸을 때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사람 옆에서 누군가가 증언을 유도한 점 때문에 그 증언의 증명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10. 다음으로는 증거개시(開示, disclosure) 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형사소송법 제도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한국의 형사소송제도를 보자면, 여러 가지 선진적 제도와 실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거개시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거개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취지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과 각종 국제형사재판소가 예외없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증거개시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한 가지는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에서 부르고자 하는 증인과 관련하여서는 그가 그 이전에 작성하거나 진술한 모든 진술서를 미리 피고인 측에게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² 예컨대 검찰 측에서 어떤 탈북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가 탈북 후 작성한 모든 진술서를 피고인 측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보호 하에 오게 된 이후, 이들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조사(interview) 내용을 전부 녹화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게 자료를 남겨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² Rule 66 (A)(ii) of ICTY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11. 다음으로는, COI 보고서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자신들도 장래에 국제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고위 지도자들이 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통상 직접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휘책임(command responsibility)이나 상급자 책임(superior responsibility) 등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한 법리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 고위지도자가 부하들이 저지르는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의 경우라면 김정은이나 고위 지도자가 반인도범죄들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훗날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북한의 고위지도자들에게 국제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들에게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또는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COI 의 보고서 내용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향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12. 다음으로는 북한에서의 반인도범죄에 책임있는 사람을 형사소추한다고 할 때에 어떤 재판소에 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COI 보고서는 ICC 회부나 ICTY 와 같은 북한의 반인권범죄 처벌을 위한 임시재판소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ICC 회부의 장점은 이미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 관할권의 한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규약 제 11 조에 따라 ICC 는 로마 규약이 발효된 2002 년 7 월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북한 문제만 다루는 임시재판소를 설치하는 것도 특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서 필요한 만큼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재판소의 형태나 절차 및 재판관 구성 등에 있어서 북한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임시재판소들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점이 재판소 설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 정권이 존속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서 언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해서 재판이 개시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재판소를 설치해 놓은 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나 하는 고민도 생길 것입니다.

14. 유엔안보리의 의결로 ICC에 회부하든, 또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든, 이는 모두 유엔 헌장 제 7장에 따른 국제평화와 안전(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을 지키기 위한 안보리의 권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평화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보리가 ICTY³ 또는 ICTR⁴을 설립하게 된 배경인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 사태, 그리고 다르푸르(Darfur)⁵ 및 리비아⁶ 사태를 ICC에 회부하게 된 배경에는 모두 전쟁 내지 무력 충돌(armed conflict) 상황이 있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인 무력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다음으로 북한 문제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현 정권이 붕괴되지 않으면 국제재판소를 설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에도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이 된다면, 피고인들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신병이나 범죄지, 기타 증거들이 한국 정부의 주권 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이 재판권과 신병을 이양하지 않으면 국제형사재판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와 협조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 그런데 앞으로 통일이 될 지 안 될 지, 통일이 된다면 언제 될 지, 어떤 형태로 될 지는 매우 불확실한 문제로서 한국조차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는 특히나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뜨겁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 전쟁 억지 문제 등 당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 안보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보다 급하고 중요합니다. 북한을 응징하는 국제재판소 설치가 때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본래

³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 Doc. S/RES/827 (1993), 25 May 1993.

⁴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 Doc. S/RES/955 (1994), 8 November 1994.

⁵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93, Doc. S/RES/1593(2005), 31 March 2005.

취지와 다르게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불안정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재판소를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국제재판소가 속성상 국제정치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안보적 상황 변화에 따라 쉽사리 신속적으로 재판소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조차도 북한의 반인권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재판소 설치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17.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에 남북한이 어떠한 통일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정의와 책임을 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과 화해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형사 책임과 소추를 거론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논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의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정의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⁶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0, Doc. S/RES/1970(2011), 26 February 2011.

〈번역문〉

Studi mengenai kejahatan melawan HAM Korea Utara dan Laporan COI

ICTY Hakim Kwon O-Gon

1. Terima kasih yang sedalam-dalamnya kepada Komisi Nasional HAM Republik Korea, Akademi Ilmu Pengetahuan Indonesia dan para pejabat komisi HAM yang telah mengundang saya untuk turut hadir di acara ini.

2. Sebelum masuk ke inti pembicaraan, ada yang perlu diketahui. Saya adalah seorang hakim di Pengadilan Kriminal Internasional Untuk Bekas Yugoslavia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tau ICTY) berkewarganegaraan Republik Korea. Akan tetapi pendapat yang akan saya presentasikan hari ini tidak mewakili ICTY, PBB atau pun Republik Korea, melainkan pendapat pribadi saya.

3. Sejauh ini ada beberapa saksi, buku, artikel pers, dokumenter, artikel skripsi, foto atau laporan mengenai masalah hak asasi Korea Utara. Tapi, saya belum pernah melihat laporan atau bukti komprehensif, sistematis dan meluas dari Komisi Penyelidikan HAM Republik Rakyat Demokratik Korea, atau COI.

4. Pelapor Khusus Mr Darusma telah mempresentasikan Laporan COI dengan baik, oleh karena itu saya hanya menyampaikan beberapa poin pendapat saya yang berkaitan dengan presentasi tersebut secara singkat.

5. Saya telah ikut serta dalam persidangan kasus kriminal internasional sebagai hakim selama 14 tahun. Karena itu saya ingin menyampaikan beberapa hal yang harus dipertimbangkan ketika kasus HAM Korea Utara menjadi subjek peradilan pidana internasional.

6. Kritik terbesar dari peradilan pidana Internasional adalah bahwa proses persidangan yang terlalu lama. Sidang pertama saya mengenai kasus Slobodan Milosevic berjalan selama 4 tahun dan harus ditutup tanpa membuahkan hasil karena terdakwa meninggal dunia. Memang ada beberapa faktor yang menyebabkan lamanya proses pengadilan tersebut, tapi penyebab utamanya adalah fakta yang diajukan oleh jaksa atau latar belakang kasus yang mereka tentukan terlalu luas.

Sebagai contoh, dalam kasus dakwaan Milosevic yang ditangani, sama saja dengan menangani semua tindakan kejahatan yang terjadi dalam 3 kali perang selama 10 tahun di semenanjung Balkan. Jika seperti ini, bukan hanya satu kasus melainkan harus mengusut puluhan ribu kasus, mengumpulkan ribuan saksi dan bukti.

Dengan begitu proses peradilan pasti akan memakan lebih banyak waktu. Menurut saya, dalam mempersiapkan peradilan pidana Internasional mengenai kasus HAM Korea Utara, perlu dipilih fakta-fakta simbolik dan representatif tidak perlu mengambil semua fakta dan latar belakang untuk mengefisienkan dan mempercepat proses peradilan.

7.Selanjutnya, yang terpenting adalah mengumpulkan dan melindungi keterangan saksi yang relevan . Pertama, mengenai penentuan kasus sesuai dengan standar bukti (standard proof). COI telah menyatakan bahwa pengakuan fakta harus sesuai dengan “Dasar bukti atau Reasonable Ground” seperti instansi pemeriksaan fakta “Badan Pencarian Fakta” di bawah naungan PBB. Sebaliknya, standar pengakuan fakta dari pengadilan kriminal menuntut harus sesuai dengan “cukup untuk menghindari kecurigaan atau (Beyond reasonable doubt)”. Hal ini terkait dengan prinsip dasar hukum pidana bahwa tidak mengorbankan satu orang tak bersalah untuk membebaskan ratusan kriminal. Oleh karena itu, “Dasar bukti atau Reasonable Ground” menjadi alasan untuk melakukan penyelidikan tetapi jika tidak memenuhi standar “cukup untuk menghindari kecurigaan atau (Beyond reasonable doubt)” tidak akan dapat membuktikan untuk mengakui kejahatannya.

8.Oleh karena itu, saya ingin menekankan bahwa perlu persiapan yang detail dan hati-hati secara hukum dalam pengumpulan dan melindungi kesaksian dari saksi.Terdakwa akan berusaha dengan segala cara yang bisa digunakan untuk menimbulkan keraguan yang beralasan terhadap kesaksian yang diajukan oleh jaksa dalam persidangan pidana. Misalnya pengumpulan kesaksian korban dengan cara menanyakan indikasi, mengedit agar kesaksian ditolak atau tidak terpilihnya bukti.Keterangan saksi yang disesuaikan dengan informasi yang dikumpulkan oleh instansi intelijen sangat berbahaya. Buku yang diterbitkan dengan kesaksian sesuai dengan agenda yang sudah ada atau ditulis untuk dipublikasikan juga tidak cukup sebagai bukti kuat.

9.Suatu hari, saya sempat melihat sebuah organisasi di suatu negara mengadakan konferensi pers untuk melaporkan kejahatan tidak manusiawi di Korea Utara dengan mengundang para pengungsi Korea Utara sebagai saksi. Tetapi, dihadapan pers saksi terlihat tegang hingga memberi kesaksian yang berbelit-belit atau bicara dengan terbata-bata sehingga pembawa acara yang juga menjadi penerjemah harus mengoreksi atau mengarahkan kesaksian mereka agar sesuai dengan fakta yang mereka kemukakan sebelumnya.

Untungnya, para wartawan asing tidak mengerti bahasa Korea. Jika kesaksian tersebut disaksikan di pengadilan pidana internasional sebagai bukti bersalah, maka kesaksian itu tidak akan diterima sebagai bukti konkret karena ada seseorang mengarahkan jawaban atas kesaksiannya.

10.Selanjutnya mengenai peraturan pengungkapan informasi. Walau saya sama sekali tidak mengenai sistem KUHAP Indonesia, jika melihat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orea, meskipun diakui system dan pelaksanaannya sudah maju dalam berbagai aspek, namun belum mengadopsi sistem pengungkapan kriminal. Tapi pengungkapan ini diadopsi oleh hampir semua negara maju dan pengadilan pidana internasional sesuai dengan "Konvesi Internasional mengenai Hak Politik dan Sipil". Salah satu inti dari skema pengungkapan itu adalah jika jaksa ingin memanggil saksi harus menyerahkan kesaksian yang dibuat atau disaksikan sebelumnya kepada terdakwa. Dengan begitu pengungsi dibawa sebagai saksi dalam perlindungan Korea Selatan, semua konten penyelidikan(wawancara) direkam, menulis catatan kesaksiannya, sebagai cara untuk mendokumentasikan seluruh penyelidikan. Menurut saya penting membuat data dan menyimpan secara transparan.

11.Selanjutnya, sebagaimana disarankan dalam laporan COI, memberitahu kepada pemimpin tingkat tinggi KorUt mengenai kejahatan tidak manusiawi yang dilakukan di Korea Utara dan untuk menyadarkan mereka bahwa mereka pun akan terkena tuntutan pidana pelanggaran hukum internasional di masa depan.Dari sudut pandang praktik pidana internasional, para pemimpin tingkat tinggi menjadi terget penuntutan pidana, tetapi pada umumnya mereka tidak secara langsung melakukan kejahatan tersebut. Untuk menanyakan tanggung jawab mereka mencari kesalahan dalam berbagai tanggung jawab sebagai komando (tanggung jawab komando) atau tanggung jawab superior (tanggung jawab superior).

Selanjutnya, sebagaimana disarankan dalam laporan COI, memberitahu kepada pemimpin tingkat tinggi KorUt mengenai kejahatan tidak manusiawi yang dilakukan di Korea Utara dan untuk menyadarkan mereka bahwa mereka pun akan terkena tuntutan pidana pelanggaran hukum internasional di masa depan. Dari sudut pandang praktik pidana internasional, para pemimpin tingkat tinggi menjadi terget utama penuntutan pidana, tetapi pada umumnya mereka tidak secara langsung melakukan kejahatan tersebut. Untuk menanyakan pertanggung jawaban atas hal-hal tersebut, mereka akan diberikan pertanyaan mengenai prinsip hukum berbagai tanggung jawab seperti tanggung jawab komando, tanggung jawab superior, dll.

Terutama, apakah Anda tahu atau bisa mengetahui kejahatan yang dilakukan para pemimpin senior sering menjadi fokus masalah. Dalam kasus Korea Utara, Kim Jong-un, atau jika pemimpin senior harus mengetahui kejahatan dan tindakan tidak manusiawi terjadi di Korea Utara. Oleh karena itu, untuk meminta tanggung jawab Kriminal Internasional untuk seorang pemimpin senior Korea Utara sering memberitahu kejahatan dan tindakan tidak manusiawi sedang terjadi di Korea

Utara untuk nantinya akan membuktikan fakta bahwa mereka sudah tahu apa yang terjadi selama ini.

Sebagai contoh, pada pertemuan tingkat tinggi dengan Korea Utara atau Pelapor Khusus bertemu dengan pemimpin Korea Utara, menyinggung mengenai kejahatan dan tindakan tidak manusiawi di KorUt dan laporan COI. Langkah-langkah ini akan menjadi efek menghambat kejahatan dan tindakan tidak manusiawi untuk masa mendatang.

12. Selanjutnya pertimbangan untuk menuntut ke pengadilan apa jika ingin menuntut pidana penanggung jawaban mengenai tindakan tidak manusiawi di Korea Utara. Laporan COI merekomendasikan dengan tuntutan ICC atau mendirikan pengadilan sementara ICTY untuk menghukum tindakan tidak manusiawi Korea Utara.

Ada kelebihan dan kekurangan masing-masing dari dua metode ini. Kelebihan menuntut ICC adalah sudah dilengkapi dengan fasilitas manusia dan material yang dibutuhkan oleh pengadilan sudah ada. Namun, Hak kewenangan Anda akan dapat dibatasi jangka waktu tertentu. Sesuai dengan Pasal 11 ICC Romakonvensi bahwa Anda dapat memiliki yurisdiksi hanya untuk kejahatan yang dilakukan setelah Kovenan Romawi mulai berlaku pada bulan Juli 2002.

13. Ada keuntungan dan kerugian tertentu jika mendirikan pengadilan sementara khusus untuk menangani Korea Utara. Keuntungan besar untuk dapat menghukum sesuai dengan hitungan hingga dapat mengatasi batas waktu. Dalam bentuk dan prosedur, dan memilih hakim untuk persidangan dapat memperhitungkan kekhususan Korea Utara.

Beberapa unsur dibawah ini menjadi hambatan untuk mendirikan pengadilan sementara karena pengadilan yang ada telah dikritik karena membutuhkan anggaran dan waktu yang banyak.

Pemerintah Korea Utara sedang berjalan hingga sulit memperoleh kehadiran terdakwa terkait dengannya sehingga harus menunggu waktu yang cukup lama untuk mengadakan peradilan, saya mengkhawatirkan hal tersebut

14. Menuntut pihak ICC berdasarkan keputusan dari Dewan Keamanan PBB. Atau membuka Pengadilan Khusus berdasarkan dengan kuasa dari Dewan Keamanan untuk menjaga perdamaian dan keamanan internasional (Perdamaian dan Keamanan Internasional dalam keputusan PBB, Bab VII, ada juga isu hak asasi manusia di Korea Utara akan mengancam dan menjadi masalah dalam perdamaian dan keamanan dunia.

Kasus Yugoslavia dan Rwanda menjadi latar belakang dalam membentuk ICTY atau ICTR. Yang harus diingat dalam kasus Libya dan Daifur, ICC dituntut karena menghadapi konflik bersenjata

yang serius. Oleh karena itu, Cina dan Rusia mendapatkan hak veto terhadap Dewan Keamanan Internasional. Tanpa adanya konflik bersenjata, sulit untuk memberikan keyakinan terhadap kasus HAM yang dapat berakibat terhadap keamanan dunia, sehingga pihak penuntut harus memberikan argument yang meyakinkan.

15. Selain itu, Dewan Keamanan Dunia pun harus mempertimbangkan posisi Korea Selatan yang paling dekat dengan Korea Utara karena memangku kepentingan bersama. Jika rezim di Korea Utara tidak runtuh, maka penyidikan oleh Pengadilan Internasional pun akan sangat sulit untuk dilakukan. Meski rezim di Korea Utara runtuh, persatuan antara Korea Utara dan Korea Selatan belum dapat dipastikan. Jika bangsa Korea bersatu, para pelaku kejahatan atau tempat yang dilakukan kejahatan dan bukti bukti lainnya akan ditempatkan dibawah kedaulatan pemerintahan Republik Korea. Jika Korea Selatan tidak menyerahkan hak konstitusi, Pengadilan Pidana Internasional akan sulit diadakan. Oleh karena itu, persetujuan dan kerjasama dari Korea Selatan sangat penting dalam membuka dan mengoperasikan Pengadilan Pidana Internasional.

16. Apakah di masa depan kedua negara dapat bersatu? Dan kapan dapat bersatu? Bahkan Korea sendiri pun tidak dapat memprediksi dan menentukan kepastian tentang persatuan kedua negara. dan masalah politik dan kesepakatan sosial yang panas untuk dibahas tidak mudah. Bagi Korea Selatan, HAM yang dimiliki penduduk Korea Utara merupakan hal yang penting, tapi masalah nuklir, pencegahan terjadinya peperangan di daerah perbatasan pun menjadi isu-isu keamanan yang lebih penting dan mendesak.

Dibukanya Mahkamah Internasional dapat menimbulkan masalah kebijakan Korea Selatan terhadap Korea Utara, dan juga memicu serta menghasut Korea Utara untuk merusak kenyamanan negaranya. Korea Selatan dan negara-negara yang terkait dengan kepentingan tertentu akan terbebani karena adanya kekuasaan Mahkamah Internasional. Jika Mahkamah Internasional sudah berdiri, tidak akan ada pertimbangan dalam perubahan situasi keamanan dan hubungan politik internasional dengan Semenanjung Korea.

Dengan alasan ini, Korea Selatan sendiri tidak mudah untuk menentukan kesepakatan dan kerja sama pada pembukaan Pengadilan Internasional untuk peradilan tindak kejahatan dan tindakan tidak manusiawi di Korea Utara.

17. Sebagai penutup, jika Korea Selatan dan Korea Utara dapat bersatu melalui sebuah proses, maka yang terpenting adalah merundingkan beban tanggung jawab dan keadilan

Hal ini dicemaskan dapat menyinggung penuntutan dan tanggung jawab pidana karena terjadinya gangguan integrasi dan rekonsolidasi. Tetapi menurut saya tanpa adanya perdebatan mengenai keadilan dan perdamaian, maka keadilan tidak akan berlanjut. Saya yakin bahwa untuk mewujudkan perdamaian dan keadilan di Semenanjung Korea, kita harus menjunjung tinggi perdamaian dan keadilan dan kedua hal ini harus berjalan bersama-sama.

1세션 :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발 제

아시아지역의 반인도범죄 사례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Focusing on cases in Asia and proposal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Adriana Elisabeth (인니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Dr. Adriana Elisabeth (Head of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LIPI)

Isu HAM dalam Perspektif Internasional: Kasus Korea Utara

Simposium Internasional, Hotel
Sultan Jakarta, 10 Februari 2015

Pengantar

- HAM masih dipahami sebagai isu yang berdiri sendiri, tidak berhubungan dengan isu lain ataupun dengan dinamika di berbagai level.
- HAM adalah persoalan klasik yang sering berulang, tidak unik.
- Perbaikan kondisi HAM sulit dilakukan, meskipun banyak kerjasama internasional.

Sistematika Presentasi

- Perkembangan isu HAM
- Pendekatan dalam Memahami HAM
- Isu HAM Korea Utara
- Upaya perbaikan HAM Korea Utara melalui kerjasama internasional

Perkembangan Isu HAM

- HAM bagian dari Kejahatan terhadap Kemanusiaan.
- HAM bukan isu tunggal, tapi berhubungan dengan dinamika politik, keamanan, dan ekonomi, di tingkat nasional/lokal, regional dan global.
- Pada umumnya, HAM dimaknai sebagai isu-isu marginal dalam konteks pertentangan norma dan nilai → misalnya masalah tanah adat, posisi perempuan dalam keluarga atau komunitas dan lain-lain.

Perkembangan Isu HAM (2)

- HAM dalam dinamika politik, keamanan dan ekonomi di tingkat nasional dan regional/global.
 - Konflik vertikal, konflik komunal & kekerasan politik yang menjurus pada pelanggaran HAM.
 - Kepentingan ekonomi → MNCs *vs* masyarakat lokal.
 - Keamanan regional dalam konteks persaingan kekuatan besar/eksternal.

1. Pendekatan menurut Tingkat Analisa

- Pendekatan Lokal/Nasional
- Pendekatan Regional:
 - Komitmen dalam mengimplementasikan HAM dan demokrasi di ASEAN .
- Pendekatan Global:
 - Global issue/agenda sama seperti isu-isu demokrasi, gender, lingkungan hidup dan kejahatan kemanusiaan
 - Kerjasama internasional: Uni Eropa, PBB, ICC, dll.
- Internasional: prinsip, norms, nilai universal
- Regional: prinsip universal + prinsip regional (Piagam ASEAN)
- Nasional: prinsip universal + Konstitusi Negara/Konteks Lokal
- Individual: pengetahuan dan pemahaman personal/individu mengenai HAM yang berasal dari keluarga, ajaran agama, komunitas/masyarakat tertentu

2. Pendekatan *Discourse Analysis*

- *Fact findings*, Laporan penelitian, Laporan investigasi → Pelapor Khusus PBB dan *Commission of Investigation* (Col)
- Kemaunan (willingness) dan Kemampuan (capability) setiap negara.
- Dinamika Regional/Global:
 - ASEAN (AICHR)
 - Uni Eropa (sub-komisi HAM di Parlemen Eropa)
 - Resolusi PBB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an lain-lain.

Hambatan dalam perbaikan HAM

- Keterbatasan pengetahuan dan pemahaman mengenai substansi/urgensi untuk memperbaiki HAM.
- Tidak ada hubungan langsung dengan kepentingan nasional, sehingga tidak ada urgensi untuk merespon segera.
- Terikat pada prinsip kedaulatan negara dan non-intervensi, karena HAM merupakan isu domestik.

3. Pendekatan Hubungan Internasional

- *Offensive human rights:*
 - pelanggaran HAM yang dilakukan oleh negara lain.
- *Defensive human rights:*
 - penandatanganan kesepakatan dan ratifikasi traktat,
 - Mengintegrasikan standar HAM ke dalam konstitusi nasional (national law).

HAM, Politik dan Demokrasi

1. Rejim otoriter
2. Kekerasan politik lokal, misalnya bentrok antara pendukung calon kepala daerah, konflik antar *clan*.
3. Konflik Vertikal and konflik Komunal.
4. Kolusi antara pemerintah dan pengusaha “melawan” masyarakat lokal.
5. Demokrasi merupakan bagian dari pemenuhan HAM *versus* HAM berbeda dengan demokrasi. Kemajuan demokrasi tidak paralel dengan perbaikan HAM.

HAM & Keamanan Regional Asia Timur

- HAM Korea Utara adalah salah satu isu di Semenanjung Korea.
- Masalah lain antara Korea Utara-Korea Selatan adalah:
 - Perang yang belum selesai
 - Reunifikasi 2 Korea
 - Pengembangan nuklir Korea Utara
 - Masalah konflik perbatasan antarnegara kawasan Asia Timur

Akar Masalah HAM Korea Utara

- Ideologi “Juche” yang dianut oleh Rejim Pyongyang (dengan sistem Stalinist) telah bertentangan dengan **esensi sebuah negara yang berdaulat** terdiri dari: Pemerintah, Rakyat dan Wilayah.
- Rejim Korea Utara melakukan kejahatan terhadap kemanusiaan secara berlapis → (1) tidak mengizinkan dua bangsa bersaudara untuk bertemu, (2) tidak mampu menyejahterakan rakyat Korea Utara secara ekonomi, politik dan keamanan.

Mengapa Rejim Pyongyang bertahan dengan *Juche*?

- AMBISI KEKUASAAN
 - Kekuasaan dan kekuatan para elit politik Korea Utara.
 - Kekayaan ekonomi dinikmati oleh para elit politik.
 - Melanggar HAM rakyat Korea Utara = melawan esensi negara berdaulat.
- PERSAINGAN DENGAN EKSTERNAL POWER
 - Pengembangan senjata nuklir
 - Kebencian terhadap Amerika Serikat
- KETAKUTAN AKAN KEHILANGAN KEKUASAAN & KEKUATAN
 - Paranoid → takut menghadapi rakyatnya sendiri, negara lain di Asia Timur, dan kekuatan eksternal lain

Reaksi Internasional

- Protes
- Mengutuk
- Embargo
- Pemutusan Hubungan
- Pernyataan Solidaritas
- Pelapor Khusus PBB
- Kerjasama internasional untuk perbaikan HAM

Kebijakan Luar Negeri RI dalam Isu HAM

- Konstitusi & UU
 - UUD Negara 1945
 - UU Nomor 39/1999
- Institusi negara:
 - Kemen KumHAM, KPPPA
 - Komisi Nasional: Komnas HAM, Komnas Perempuan, Komnas Perlindungan Anak → paling lengkap

Indonesia dan HAM Korea Utara

- Sebagai Pelapor Khusus PBB & anggota tim investigasi (CoI) untuk mengumpulkan bukti-bukti pelanggaran HAM Korea Utara.
- Mengubah sikap dari abstain menjadi mendukung Resolusi Dewan HAM PBB.
- Mempertahankan hubungan diplomatik dengan Korea Utara

What's Next?

- Membangun pemahaman bersama dan urgensi perbaikan HAM Korea Utara → kampanye melalui media.
- Memantapkan komitmen politik untuk bekerjasama secara bilateral maupun regional/internasional untuk memenuhi aspek HAM:
 - Promosi
 - Protes
 - Pemenuhan
- Mengubah pendekatan → Transformasi Konflik & Dialog.
- Indonesia membangun kerangka bersama menuju keamanan regional yang lebih damai, aman dan stabil → *conceptual leadership*.

Catatan Penutup

- Kerjasama internasional untuk mempertemukan kedua bangsa Korea sebagai bagian dari mengembalikan esensi kedaulatan rakyat Korea Utara.
- Dialog menuju rekonsiliasi antara Korea Utara & Korea Selatan (bukan reunifikasi).
- Kampanye media untuk meningkatkan kepedulian publik tentang urgensi perbaikan kondisi HAM Korea Utara.

Terima Kasih

Dr. Adriana Elisabeth
Kepala Pusat Penelitian Politik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P2P LIPI)
Jakarta

국제관점의 인권문제: 북한상황

국제심포지움, Hotel Sultan Jakarta,
10 Februari 2015

소개

- 인권은 여전히 다른문제 또는 다양한 수준의 역학과 관련되지 않고 독립실행의문제로이해되고있다.
- 인권은 특별하지 않고 자주 일어나는 오래된 문제이다..
- 인권상황 개선은 많은 국제협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시행하기 힘든 일이다.

체계적인 프리젠테이션

- 인권문제의 발전.
- 인권 인식에 대한 접근.
- 북한인권문제
-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개선 노력.

인권문제의 발전

- 인권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다.
- 인권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며, 국가 및 지역단위의 차원인 정치, 안전, 그리고 경제와 연관되어있다.
- 대개, 인권은 규범과 가치성 갈등맥락의 한계 문제로 해석되어지고있다 → 예로, 나라의 전통문제,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인권문제의 발전 (2)

- 역동적 정치, 안전 그리고 경제의 국가와 지역차원에서의 인권.
 -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정치의 수직 충돌, 공동 충돌과 정치폭력..
 - 경제이익 → 다국적 기업 대 지역사회.
 - 강대국 경쟁 맥락에서의 지역안보/외부

1. 분석차원에 의한 방법

- 국가적 접근
- 지역적 접근
 - 아세안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구현약속
- 국제적 접근
 - 국제 문제/Global issue/민주주의, 성별, 환경, 인간성 범죄문제와 같은 의제
 - 국제협력: 유럽연합,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등등.
 - 국제: 원칙, 규범, 보편적 가치.
 - 지역: 보편적 원칙+지역적 원칙(아세안 헌장)
 - 국가:보편적 원칙+헌법/현지상황
 - 개인:가정, 종교교육, 단체/특정 사회에서의 인권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이해.

2. Discourse Analysis 방법

- *Fact findings*, 연구 보고서, 조사 보고서 → 유엔특별보고관, 그리고 *Commission of Investigation (Col)*
- 모든 국가의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bility)
- 지역/ Global의 역학:
 - 아세안(AICHR)
 - 유럽연합(유럽의회 인권 소위원회)
 - 유엔 결의안
 - 국제형사재판소, 등등

인권개선의 장벽

- 인권 개선을 위한 시급함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제한.
- 국가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
- 국가주권과 내정의 불간섭의 원칙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국내의 문제로만 되어있다..

3. 국제 관계에 접근

- *Offensive human rights:*
 - 다른 국가에 의해 당한 인권 침해.
- *Defensive human rights:*
 - 동의서명과 조약의 승인.
 - 국가의 헌법에 인권의 기준을 통합한다. (국가법)

인권,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1. 권위주의 제도.
2. 지역 정치폭력, 예로 지역 후보지지자 간의 충돌, 종족간의 충돌.
3. 수직 충돌과 공동 충돌.
4.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항”
5. 민주주의는 인권의 성취인 반면 인권은 민주주의와 다르다. 민주주의의 진보는 인권개선과 평행관계가 아니다.

동 아시아의 인권 & 지역안보

- 북한인권은 한반도의 문제중 하나이다.
- 남 북한 간의 다른 문제:
 - 끝나지 않은 전쟁.
 - 남 북 통일.
 - 북한의 핵 개발.
 - 동 아시아 국가간의 국경분쟁 문제.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

- 평양의 “주체 사상”(스탈린 시스템)은 정부, 국민, 영토로 구성된 주권 국가의 본질에 반대 되는 것이다.
- 북한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인간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1) 한 가족인 두 민족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경제적, 정치적으로 북한국민의 안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왜 북한은 주체사상을 고집하는가?

- 권력의 야망
 - 북한 정치 간부들의 권력과 힘.
 - 북한 정치간부들이 누리는 경제적 부
 -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 주권 국가의 본질에 대항.
- 강대국과의 경쟁
 - 핵무기 개발
 - 미국에 대한 증오
- 권력과 힘의 박탈에 대한 두려움
 - 피해 망상증 → 북한 국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직면의 두려움.

국제적 반응

- 항의
- 비난
- 금지
- 교류 두절
- 결속 선언
- 유엔특별보고관
-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 헌법과 법률
 - 1945년 국가헌법
 - 1999년 법률 제 39장
- 국가 기관:
 - 인권 법무부, KPPPA(여성인권강화및아동보호부)
 - 위원회:인권위원회,여성위원회,아동보호위원회→가장완벽

인도네시아와 북한 인권

- 북한 인권 침해의 증거 수집을 위한 유엔 북한특별 보고관과 유엔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 (Coy)
-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의를 기권의 상태를 찬성의 태도로 변경 시키것
-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유지

What's Next?

- 북한인권개선의 공감와 시급함 인식을 구축→ 미디어 캠페인.
- 인권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보장협정, 지역적/국제적으로 협력할 정치 의지를 강화.
 - 홍보
 - 보호
 - 완수
- 접근 변경→ 충돌과 대화의 변환.
- 인도네시아는 더욱 더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정된 지역안보를 향한 공동 기초를 구축할 것이다→ *conceptual leadership.*

맺음말

- 북한 국민의 주권 본질을 돌려주는 일부로써 남북 통일의 국제협력.
- 남북 사이를 위한 화해를 향한 대화(통일이 아닌).
- 북한 인권상태의 시급한 개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

감사합니다

Dr. Adriana Elisabeth

인도네시아 과학원 정치 연구센터장

2세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



발 제

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Focusing on measures of reg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Kim, Kwang-jin (Lembaga Penelitian Strategi Keamanan Nasional)

<원문>

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탈출 탈북자 현황

- 절정에 달했던 1990년대 말에 중국에만 10-4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 2-4만 명으로 추산됨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 양행밍, 3만명으로 추정, 2004.
중국군사과학원 왕이성, 3-4만명으로 추정, 2004.
미국무부, 7만 5천-12만 5천, 2005.
'좋은 벗들', 10만 명, 2006.
국제위기감시기구, 10만 명, 2006.(『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8)
- 북-중 국경마을 중국지역에 탈북여성들과 중국남성들 사이에 낳은 수만 명의 무국적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좋은 벗들'이 2006년 1월 북-중 국경마을 13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들 마을에서 북한여성과 중국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267명, 1999년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북한여성의 수를 토대로 아동 출생률을 22%로 보면, 당시 북한 여성 탈북자 규모를 225,000명으로 감안할 때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는 49,500명으로 추정됨.(위의 책 p275)
- 러시아에 파견돼 일하는 벌목, 건설 노동자 등 상당수가 현장에서 이탈해 장기간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보도되나 정확한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음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100여명의 탈북자들에게 임시망명지위를 허용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러시아 이민국 난민담당과장, 2014.2.4)
- 이외에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 시도, 태국, 대만, 호주, EU, 미국, 캐나다 등지에 망명신청, 정착

□ 해외 거주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실태

○ 난민지위 불인정 및 신분불안

-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떠돌고 있는 중국의 경우 ‘경제적 이유의 불법 월경자’라는 이유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난민은 ‘국적을 가진 나라나 거주지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자로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귀환을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 동시에 북한과 1960년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에 따라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 월경자를 북한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유엔난민고등사무소 등의 활동에도 큰 제약이 존재

* “중국에는 난민여부를 결정하는 난민판결과정이 없고, 또한 유엔난민고등사무소는 국경지방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정치적 박해의 두려움으로 망명보호를 찾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Roberta Cohen, Hearing of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March 05, 2012)

- 따라서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불안과 고통은 언제 중국공안에 잡히거나 밀고 될지 모르는 신분문제이며, 이로 인한 인권유린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음

- 중국에서 신분이 보장되면 굳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언도 다수 있음

○ 강제복송 및 북한 내 가혹한 처벌

-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복송된 9명의 청소년 사례

- 기타 복송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고문, 구타, 강제낙태, 성 유린, 구금, 강제노동, 연좌제 처벌, 강제이주, 사형 등 혹독한 인권유린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 2004년 중국 장춘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송환된 가족의 경우 어머니는 교화 형에 처해졌으나, 9세, 13세 아동은 구호소로 넘겨졌다.

2005. 가을, 청진 도 집결소, 30대 여성이 해산하였으나 아이 방치, 사망.

2005.5, 평북도 보위부 집결소, 중국에서 임신하여 송환된 여성이 구류장 출산하였으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아 사망.

2005.5, 청진 라남구역 농포 도 집결소, 임신 4개월 여성이 보안원의 구타, 강제노동으로 사망.

2004.7, 회령단련대, 32세 산모 강제낙태.

2004.2, 온성군 노동단련대, 막달인 여성을 자연분만하도록 하고, 아이를 엮어서 방치(위의 책, pp291-293).

- 특히 유엔헌장, 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거주지 및 시민권 선택의 자유와 심지어 북한 헌법에도 명시된 신앙의 자유가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음

*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1차적 조사는 남한에 가려고 시도했거나 결심하였는지 여부, 이를 목적으로 남한사람과 접촉했거나 접촉을 시도한 경우와, 목사를 만났거나 신앙을 접한 경우이며, 이것이 인정될 경우 정치적 범행으로 분류해 가장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음.

* 국경지역 보위부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시기 및 회수, 도강이후의 행적(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여부)등을 포함.

○ 인신매매

- 다수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75.5%정도가 여성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좋은 벗들’은 이들 중 상당수(51.9%)가 중국남성과 동거형태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파악함(위의1 책, p277)

- 또한 다수의 탈북여성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국에서 한 차례, 많게는 수차례에 걸쳐 인신매매, 강제결혼 당한 것으로 확인됨

- 이들은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월경하였으나, 이후 다수는 무의식 또는 강제적 인신매매, 조직적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음

* 2002년 입국한 새터민 000은 1998년부터 20여명의 북한인을 중국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 “조선족의 요구로 1인당 4천 위안정도(21세 정도는 6천, 30세 넘으면 3-4천 위안)를 받고 중국으로 보냈다. 당시 북한에서는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시집보내달라는 여성들이 매우 많았다. 우리가 4천 위안 정도에 넘기면 한족들은 1만 위안 정도에 되팔곤 했다”는 것이다.(위의 책 p280)

○ 노동착취

- 신분적 불안으로 탈북자들은 대부분 강제노동, 노동착취, 임금체불, 성매매, 아동노동 등 온갖 형태의 노동착취에 내몰리고 있음

○ 가정 파괴 및 각종 인명 사고

- 강제결혼, 인신매매, 강제복송, 남한 행, 북한의 연좌제 처벌 등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가정 파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음
- 또한 탈출과정에 악어에 먹히거나 실종되는 등 수많은 인명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음

□ 지역협력 방안

○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협력

-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탈북자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은 모두 이미 북한 내에서 가장 가혹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박해의 대상이며, 탈북자들은 강제복송 될 경우 이런 박해에 더 엄중히 노출되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박해와 차별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이들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보안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에 분명히 부합함
- 다음의 이유는 이들이 겪는 경제적 궁핍의 원인이 온갖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박해를 감행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시스템, 당국의 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이들은 대부분 ‘현지 체제 중 난민’의 지위에도 부합하기 때문,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에 의해 정의된 ‘현지 체제 중 난민’이란 탈북 당시 난민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 복송 후 타당한 박해의 두려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보편적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협조

-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불법이주자(Undocumented Migrants)라 할지라도 생명권, 노예 및 강제노동금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금지, 사생활 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음
- 상기의 국제적 협약, 가치에 따라 국제적 협조 확대가능

○ 암묵적 탈북자 구출

- 대부분의 나라들이 탈북자들을 암묵적으로 구출, 도와주고 있음
- 중국을 벗어난 탈북자들은 동남아시아 또는 몽골을 거쳐 한국행 실현, 태국 등 나라들은 자국에 불법 입국한 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추방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해 그들이 원하는 국가로의 정착을 허용하고 있음

○ 지역의 제도적 협조

-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에 대한 구조 사례 참조
-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베트남 난민 또는 다른 나라의 난민을 중국사회에 통합시키거나 다른 곳에 정착하도록 유엔난민고등기구와 협조해 온 사례 참조
- 대량탈북, 북한붕괴 대비 비상 난민캠프 기획 및 협조

〈번역문〉

Studi kerjasama regional dan internasional mengenai masalah pengungsi dan imigran dari Korea Utara

▮ Kim, Kwang-jin (Lembaga Penelitian Strategi Keamanan Nasional)

□ Keadaan pengungsi yang melarikan diri dari Korea Utara

- Diperkirakan terdapat 100.000-400.000 orang pengungsi yang melarikan diri ke Cina pada akhir tahun 1990-an. Belakangan ini jumlah para pengungsi berkurang menjadi 20.000-40.000 orang pengungsi.

Sekretariat Jenderal Lembaga Penelitian Hak Asasi Manusia Cina Yang Cheng Ming, diperkirakan 30.000 orang, 2004

Akademi Ilmu Militer Cina Wang Yi Sheng, diperkirakan 30.000-40.000 orang, 2004

Departemen Dalam Negeri AS, perkiraan 75.000-125.000 orang, 2005

“Kawan Baik”, perkiraan 100.000 orang, 2006

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perkiraan 100.000 orang, 2006

(Kamus besar HAM Korea Utara, Institut Unifikasi Nasional, 2008)

- Diperkirakan terdapat puluhan ribu anak di daerah perbatasan Korea Utara-Cina yang terlahir dari hubungan antara wanita Korea Utara dengan pria Cina yang statusnya tidak terlindungi karena tidak memiliki kewarganegaraan yang sah.
- Berdasarkan hasil penelitian dari “Kawan Baik” di 135 desa disepanjang daerah perbatasan pada Januari 2006, sebanyak 267 orang anak terlahir dari hubungan antara wanita Korea Utara dan Pria Cina.

Keberadaan para wanita Korea Utara yang tinggal di daerah tersebut sejak tahun 1999, rasio kelahiran anak mencapai angka 22%. Pada saat itu terdapat 225.000 orang wanita Korea Utara yang mengungsi, hingga diperkirakan jumlah bayi yang dilahirkan oleh para wanita Korea Utara ini mencapai 49.500 orang bayi. (Halaman 275, Buku yang disebutkan diatas)

- Sebagian besar buruh Korea Utara yang dikirim untuk bekerja di bidang

penebangan, konstruksi bangunan dan sebagainya telah melarikan diri hingga menyandang status ilegal dalam jangka waktu yang panjang dan tak dapat dihitung dengan resmi.

Pemerintah Rusia telah memberikan status perlindungan sementara secara terbuka kepada sekitar 100 orang pengungsi yang berasal dari Korea Utara, (Lembaga Imigrasi Rusia, 4 Februari 2014)

- Selain itu, para imigran Korea Utara ini juga mencoba untuk mengungsi ke seluruh dunia hingga meminta perlindungan dan ijin tinggal(Suaka) di negara Thailand, Taiwan, Australia, Uni Eropa, Amerika Serikat, Kanada termasuk juga Mongolia, Asia Tenggara.

□ **Kondisi pelecehan HAM yang dihadapi oleh para pengungsi(pembelot) Korea Utara yang tinggal di luar negeri**

○ **Status pengungsi yang tidak stabil dan identitas yang kurang jelas**

- Seperti kasus di Cina, banyak pembelot Korea Utara yang tidak memiliki status identitas yang jelas atau sebagai pengungsi karena alasan pelarian dirinya dari faktor ekonomi .

* Menurut hasil Konvensi Jenewa di bidang hukum internasional, pengungsi adalah orang yang “berada di luar negara dari negara kewarganegaraannya, dan tidak ingin kembali ke negaranya sendiri karena diliputi rasa takut dengan alasan penganiayaan secara ras, agama, kebangsaan, kelas sosial tertentu dan pandangan politik.

- Berdasarkan penandatanganan “Kesepakatan Penyerahan Pelaku Kriminal dan Pengungsi antara Cina - Korea Utara pada tahun 1960”, Korea Utara meminta agar para pengungsi yang melarikan diri karena masalah ekonomi dipulangkan lagi ke Korea Utara.

- Selain itu, ada gangguan besar pada kegiatan kantor pengungsian PBB

* “Di Cina tidak ada lembaga yang dapat menentukan status pengungsi, kantor PBB yang mengurus masalah pengungsian tidak berwenang untuk mengakses daerah pemukiman di wilayah perbatasan Korea Utara sehingga PBB tidak tahu dengan jelas berapa banyak pengungsi dari Korea Utara yang mencari perlindungan dengan cara suaka untuk menghindari tindak penganiayaan.”

“(Roberta Cohen, Sidang Komisi al-Executive Congression di China, 5 Maret 2012)

- Oleh karena itu, kecemasan terbesar dan rasa sakit yang dirasakan pengungsi Korea Utara yang tinggal di Cina adalah kekhawatiran akan penangkapan dan dilaporkan tanpa mengetahui status mereka yang tidak terjamin. Dengan alasan alasan tersebut, dapat mengakibatkan penganiayaan hak asasi manusia
- Banyak pengungsi telah mengakui bahwa jika status mereka di Cina terjamin, maka mereka tidak perlu repot mengungsi Ke Korea Selatan dan mengambil resiko berbahaya.

○ Pemulangan paksa dan hukuman berat terhadap keluarga pengungsi dari Korea Utara

- Contoh pemulangan paksa pengungsi Korea Utara dari Laos pada Mei 2013
- Selama ini banyak kasus pemulangan pengungsi yang dilaporkan dan sering mengalami tindak kekerasan dan pelanggaran HAM seperti penyiksaan, pemukulan, aborsi paksa, dikurung, perkosaan, kerja paksa, hukuman implikasi, imigran paksa, hingga hukuman mati.

* Sebuah keluarga yang gagal melarikan diri dari Changchun Cina ke Korea Selatan. Ibunya dijatuhi eksekusi mati dengan cara dibakar. Dua anak berumur 9 tahun dan 13 tahun dikurung di sebuah lembaga sosial pada tahun 2004.

Pada musim gugur di tahun 2005, seorang wanita hamil berusia 30 tahun-an melahirkan di panti sosial, tapi mereka diabaikan hingga bayinya meninggal.

Pada Mei 2005, di sebuah Badan Keamanan Provinsi Pyeongyang, seorang wanita yang dipulangkan dari Cina dalam kondisi hamil akhirnya melahirkan, tapi semua orang dilarang mendekati untuk membantu mereka hingga bayinya meninggal.

Mei 2005 di Lembaga Sosial Provinsi Nongpo distrik Lanam Chungjin, seorang wanita yang hamil 4 bulan mengalami keguguran karena pihak keamanan melakukan tindak pemukulan dan dipaksa bekerja keras.

Juli 2004, Pelatihan Kamp Hoeryong, Wanita berumur 32 tahun dipaksa melakukan tindak aborsi. Februari 2004, Sebuah lembaga pelatihan kerja di Kabupaten Onsong, membiarkan seorang wanita melakukan persalinan sendiri dan mengabaikan bayinya dalam posisi tengkurap (Buku tersebut, Halaman 291-293).

- Penindasan hak untuk bebas memilih kewarganegaraan tertera di atas charter PBB, dalam Konvensi HAM terutama mengenai kebebasan beragama telah yang

dinyatakan oleh UUD Korea Utara.

* Berdasarkan penyelidikan dibawah ini, bagi imigran Korea Utara yang pernah berniat untuk melarikan diri ke Korea Selatan atau sudah mencoba, atau bertemu dengan orang Korea Selatan untuk menjadi imigran, bertemu dengan pendeta untuk mendengar khotbah, maka mereka akan dijatuhi hukuman yang paling kejam..

* Penyelidikan oleh badan keamanan berdasarkan hubungan keluarga, alamat tinggal, waktu percobaan melarikan diri, tingkah laku setelah pelarian diri, (Bertemu dengan orang protestan, orang Korea Selatan, pergi ke Korea Selatan, perdagangan manusia, menonton film biru atau program tayangan Korea Selatan)

○ Perdagangan manusia

- Dari beberapa survei, sebanyak 75.5% imigran berjenis kelamin perempuan, menurut survei 'Kawan Baik' diantara mereka sebagian besar (51.9%) telah tinggal bersama dengan pria Cina (Buku 1 di atas, Halaman 277)
- Selain itu, dalam sebuah wawancara sebagian besar wanita imigran Korea Utara mengatakan telah menjadi korban perdagangan manusia, kawin paksa minimal satu kali atau bahkan lebih dari itu.
- Pada awal mereka pulang tanpa rasa terpaksa, tapi tak lama kemudian mereka menjadi target perdagangan manusia paksa tanpa disadari.

* 000 Saetemin yang menjadi imigran pada tahun 2002, telah membantu kurang lebih 20 orang warga Korea Utara untuk bermigrasi ke Cina. "Untuk membantu keinginan orang Cina keturunan Korea menjadi imigran ke Cina dengan biaya 4000 yuan per-orang (Umur 21 tahun biayanya 6000 yuan, usia lebih dari 30 tahun-an sebesar 3000-4000yuan). Pada saat itu, banyak wanita Korea Utara menawarkan diri untuk menikah dengan pria Cina. Jika kami menjual mereka dengan harga 4000 yuan, Cina keturunan Korea kembali menjual mereka dengan harga 10ribu yuan. (Buku di atas, halaman 280)

○ Pengisap darah para buruh

- Sebagian besar imigran Korea Utara mengalami kerja paksa, tindak pemerasan, penundaan pembayaran upah, pelacuran, anak kecil pun dipaksa bekerja dan tindak kekerasan lainnya karena tidak memiliki perlindungan dari negara.

○ Kehancuran keluarga dan korban Jiwa

- Kawin paksa, perdagangan manusia, pemulangan paksa, dikirim ke Korea Selatan, keluarga yang bersangkutan dijatuhi hukuman, keluarga para imigran Korea Utara
- Selain itu, pada proses pelarian diri banyak imigran yang hilang, mengalami kecelakaan atau dimakan buaya.

□ Kerjasama Regional

○ Kerjasama untuk memberikan status pengungsi

- Mengapa harus memberikannya status pengungsi kepada mereka ? Karena imigran dari Korea Utara menjadi target penganiayaan secara politik, sosial dan agama dengan cara yang kejam. Di Korea Utara sendiri, para pengungsi yang dipulangkan paksa menghadapi lebih banyak bahaya karena akan menghadapi penganiayaan dan diskriminasi secara sistematis dalam jangka waktu panjang oleh pemerintah setempat.
- Para imigran ini memenuhi persyaratan untuk diberikan status resmi sebagai pengungsi sesuai dengan Konvensi Keamanan tahun 1967 mengenai konvensi status pengungsi tahun 1951.
- Penyebab kesulitan ekonomi adalah penganiayaan secara politik, sosial dan agama yang dilakukan berdasarkan sistem politik Korea Utara, sistem ekonomi dan sistem kebijaksanaan.
- Kantor pengungsi PBB (UNHCR) mengungkapkan, meskipun pengungsi Korea Utara yang menetap di suatu tempat tidak mungkin ditetapkan sebagai “pengungsi sistem lokal”, tapi rasa takut akan tindak penganiayaan yang akan dialami para imigran ini dianggap wajar setelah mereka dipulangkan paksa ke negaranya.

○ **Kerjasama internasional terhadap perlindungan HAM secara umum.**

- Pasal 12 ayat 2, Konvensi B dalam konvensi HAM internasional “Semua orang diberikan kebebasan untuk pindah, termasuk di dalam negara sendiri ataupun dari negara manapun.”
- Menuru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OM imigran ilegal (tidak memiliki dokumen Imigran), melarang pencabutan hak hidup, budak dan kerja paksa, penyiksaan serta perlakuan tidak manusiawi, perlindungan privasi, bebas untuk berpindah, ide dan agama, hak suara seperti HAM.
- Kerjasama internasional, dapat diperluas dalam perjanjian internasional, sesuai dengan nilai yang tertera

○ **Selamatkan imigran Korea Utara secara diam-diam.**

- Sebagian besar negara telah membantu dan menyelamatkan imigran Korea Utara secara diam-diam.
- Imigran dari Korea Utara yang keluar dari Cina, dapat masuk ke Korea Selatan melalui bantuan Asia Tenggara, Mongolia, Thailand dan beberapa negara lain yang memiliki misi kemanusiaan terhadap imigran ilegal Korea Utara agar tidak dideportasi kembali ke negara asalnya. Para imigran ini dibebaskan memilih negara

○ **Kerjasama regional secara sistematis.**

- Pengungsi dari Vietnam, kasus yang dialami manusia perahu
- Sejauh ini pemerintah Cina telah membantu integrasi proses imigrasi para pengungsi dari Vietnam dan pengungsi dari negara-negara lain yang memiliki
- Kerjasama dan perencanaan lokasi pengungsian untuk menghadapi masalah pembelotan massal dan runtuhnya Korea Utara.

2세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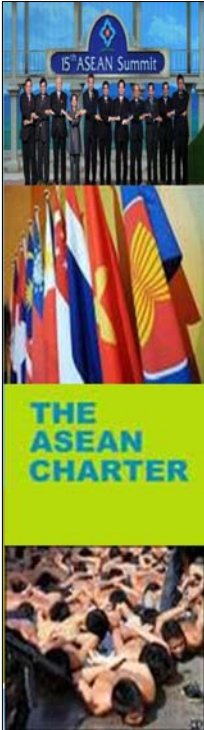
동남아 지역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안 제안

Focusing on how to approa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genda in South East Asia countries

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

Rafendi Djamin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ICHR)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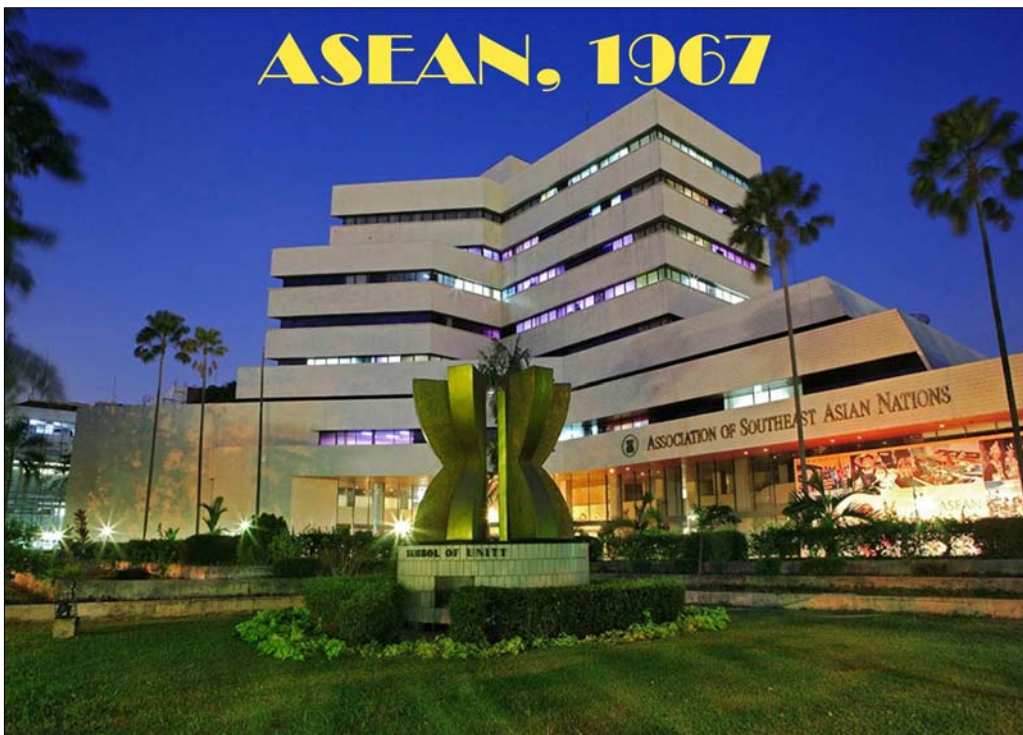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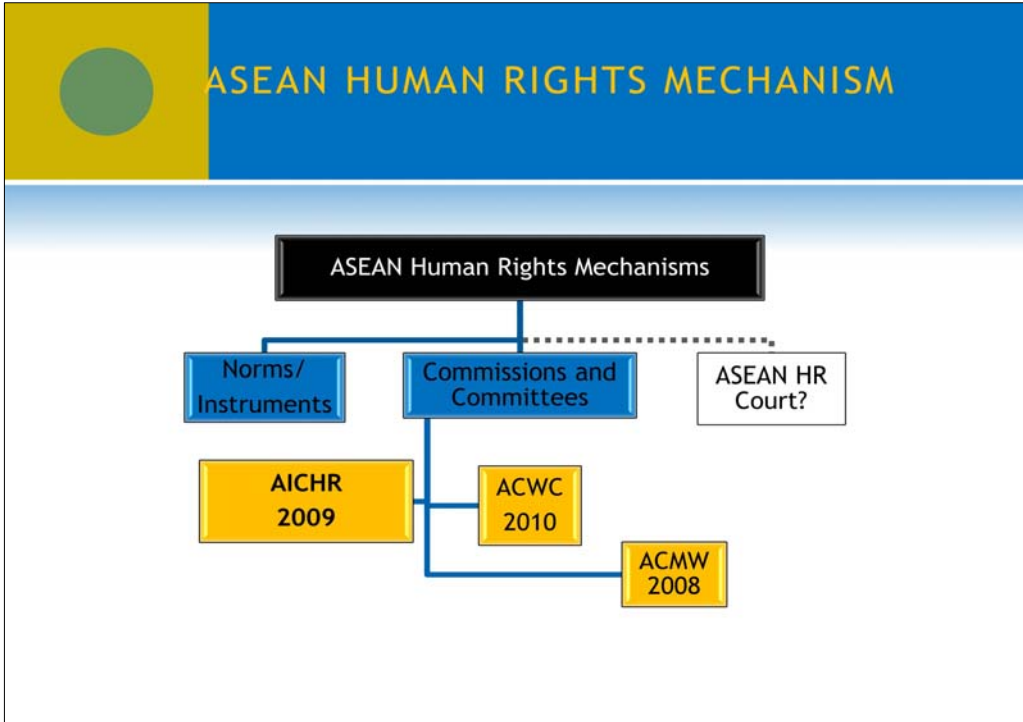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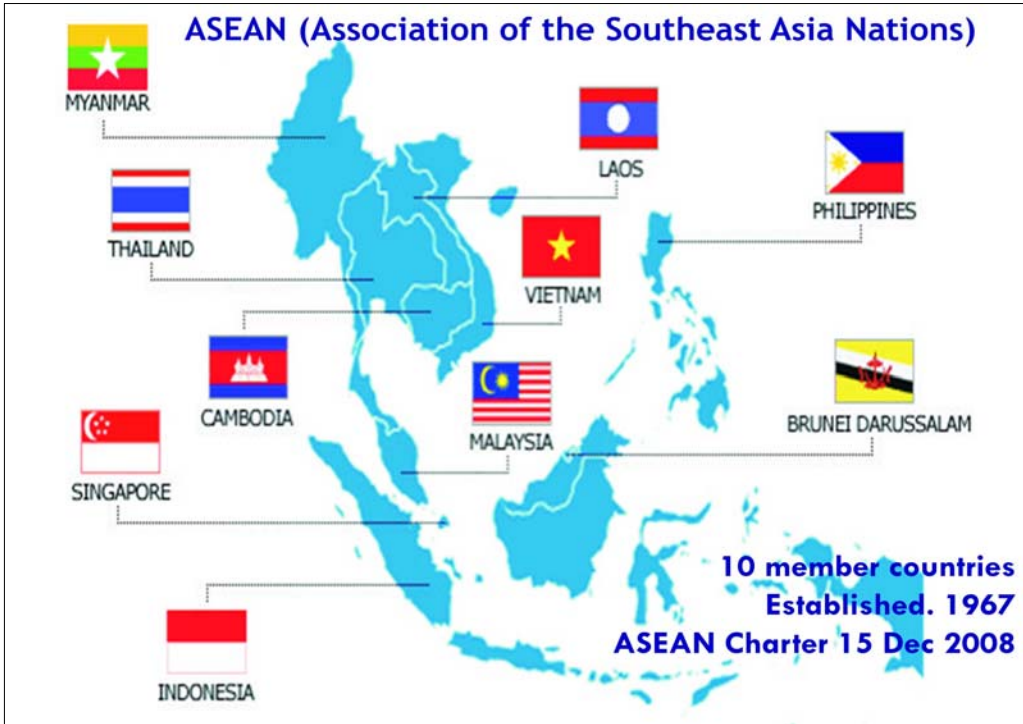
Mengukur Kerjasama Regional di Asia untuk Meningkatkan HAM di Korea Utara

Bagaimana mendekatkan agenda HAM Korea Utara di negara-negara ASEAN

Rafendi Djamin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AICHR

SIMPOSIUM HAM INTERNASIONAL HAM DI KOREA
UTARA,
LIPI, JAKARTA, 10 FEB 2015





AICHR -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Purposes and Principles of AICHR: in general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

Specifically, Article 1.5: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mplemen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ICHR'S MANDATES PROTECTION VS PROMOTION

Protection of HRs

Obtain Information

Consult with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 and entities concerned with hrs protection and promotion

Promotion of HRs

Dissemination and education

standard setting

advisory services

technical assistance

AICHR MANDATES

AICHR Has 14 Mandates: mostly on Promotion of Human Rights rather than Protection of Human Rights

Mandate 4.9

4.8 To consult, as may be appropriate, with other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entities concern with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MANDATE 4.9 ON REGIONAL/REGIONAL COOPERATION

- ④ Study visits to other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 ④ Participate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events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④ Jointly organise events with o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 ④ Meeting with other human rights mechanisms and entities
- ④ Share best practices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with other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 2012

Cooperation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Article 39

ASEAN Member States share a common interest in and commitment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shall be achieved through, inter alia,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as well as with relevan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organis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SEAN Charter.

Contact: twitter: @IndoAICHR

Email: rafendidjamin@gmail.com

2세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

토론



- Ani Widayani Soetjipto (Senior Lecture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Indonesia)
- Ani Widayani Soetjipto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조교수)
- Haris Azhar (Coordinator of KontraS)
- Haris Azhar (KontraS 코디네이터)

<원문>

HAK ASASI MANUSIA DI KOREA UTARA: BEBERAPA TANTANGAN

I Ani Widyani Soetjipto (Senior Lecture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Indonesia)

Artikel singkat ini membahas overview situasi Hak Asasi Manusia (HAM) di Korea Utara, responds dunia internasional atas kondisi dan situasi HAM di Korea Utara serta beberapa usulan strategi baru untuk perbaikan kondisi HAM di Korea Utara.

I. Situasi HAM di Korea Utara

Sudah banyak diketahui bahwa Deklarasi Hak Asasi Manusia Universal (DUHAM) beserta instrument regulasi yang lain seperti konvensi maupun deklarasi serta institusi HAM Internasional berkembang sangat pesat sejak tahun 1948 hingga hari ini. Instrumen instrument tersebut dibuat untuk memastikan bahwa hak dasar manusia tersebut dilindungi dan di jamin.

Korea utara sebagai bagian dari komunitas internasional adalah negara yang ikut menanda tangani konvensi tentang hak sipil dan politik-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lright*(konvensitentanghakekonomi, sosialdanbuday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Konvensi hak anak), da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Konvensitentangpenghapusansegalabentukdiskriminas iterhadap perempuan). Di tahun 2013 Korea utara juga menanda tangani Konvensi hak penyandang disabilitas. Prinsip tentang Hak asasi manusia juga tercantum dalam

Amandemen Konstitusi Korea Utaradatahun 2009

Semua regulasi tentang HAM tersebut dalam kenyataannya sebagian besar tidak bisa diwujudkan dalam situasi empiric di Korea Utara . Berbagai laporan badan PBB , testimoni dari para penyintas/ survival, laporan NGO, aktivis kemanusiaan ataupun memoar dan catatan mantan diplomat yang pernah bertugas di Korea Utara menunjukkan bahwa kondisi HAM di Korea Utara bisa dikatakan sangat buruk dan sangat memprihatinkan.

Berbagai bentuk pelanggaran HAM terjadi dan berlangsung secara massive , sistimatis menimpa tidak saja anak anak tapi juga perempuan, imigran, pengungsi/ pembelot, tahanan politik maupun para activist ataupun agamawan. Laporan buku putih kondisi Hak asasi manusia di Korea Utara tahun 2014 menyebutkan bahwa pelanggaran HAM di Korea utara selama bertahun tahun telah memakan korban tidak kurang dari 3 juta jiwa sejak tahun 1990 an hingga saat ini.

Selain pelanggaran hak sipil dan polirik pelanggaran hak social ekonomi juga menimpa rakyat Korea Utara karena kegagalan kebijakan ekonomi terpusat yang menyebabkan hak dasar warga Negara untuk mendapatkan pangan, pakaian, pendidikan, pekerjaan dan pelayanan kesehatan juga ikut terlanggar. Bencana kelaparan, bencana alam, kerusakan karena kelangkaan bahan pangan adalah fenomena yang biasa terjadi di Korea Utara

II. Responds Internasional atas kondisi HAM Korea Utara

Kondisi HAM di Korea Utara yang memprihatinkan telah menjadi keprihatinan dan perhatian serius dunia internasional. Beragam upaya telah dilakukan untuk memperbaiki kondisi tersebut namun hasilnya belum optimal dan belum secara

signifikan bisa merubah kondisi HAM Korea Utara menjadi lebih baik.

Beragam responds international misalnya ditunjukkan lewat Resolusi *UN* General Assembly (Majelis Umum PBB) dan Dewan HAM PBB di tahun 2012 yang diputuskan dengan suara bulat (tanpa voting) untuk perbaikan kondisi HAM di Korea Utara. Di tahun 2013 UN Human Rights Council membentuk komisi penyelidikan untuk melihat kondisi HAM di Korea Utara. Hasil investigasi dari komisi penyelidikan tersebut di publikasikan pada bulan Februari tahun 2014.

Sebelumnya di tahun 2004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elah menunjuk *special rapporteur (Pelapor khusus)* di Korea Utara. Pada tahun yang sama Kongres Amerika juga menunjuk utusan khusus untuk HAM ke Korea Utara dan memastikan bahwa prinsip HAM di hormati dan dilaksanakan dalam hubungan bilateral antara AS dan Korea Utara.

Semua upaya itu sayangnya tidak menghasilkan perubahan yang signifikan untuk perbaikan situasi HAM di Korea Utara. Pemerintahan otoritarian Korea Utara lewat permanent observe mission ke UN menyatakan dengan tegas bahwa '*violation of human rights do not take place and are unthinkable in North Korea* (Leetaeyon,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East Asian Review, vol. 5, no 4 (Winter 1993) p. 66). Korea Utara juga menolak upaya PBB dan Amnesty Internasional untuk menyelidiki pelaksanaan dan melihat kondisi HAM di Korea Utara.

Pemerintahan otoriter di Korea Utara berpendapat bahwa *Juche* (prinsip self-reliance) lebih baik dari demokrasi yang bisa berpotensi menghasilkan kekacauan untuk masyarakat Korea Utara. Materialisme, konsumerisme dianggap sebagai penyakit berbahaya yang bisa berpotensi menghancurkan rejim sosialis. Free market reform, liberalisasi seperti yang selalu diusulkan oleh Tiongkok untuk diadopsi juga di tolak untuk dilaksanakan di Korea Utara. Liberalisasi, free market reform dan kontak dengan dunia internasional dianggap berpotensi bisa menjatuhkan dan menghancurkan pemerintahan saat ini.

III. Pendekatan dan strategi baru untuk perbaikan situasi HAM Korea Utara

Situasi HAM di Korea Utara yang tidak kunjung membaik memerlukan beragam strategi baru. Perlindungan dan proteksi terhadap hak asasi manusia dalam konteks Korea Utara yang damai dan stabil adalah cita-cita yang menjadi tujuan komunitas internasional, masyarakat di regional maupun concern dari berbagai negara yang secara bilateral berhubungan dengan Korea Utara. Penggunaan power untuk tujuan melindungi hak dasar individu yang tidak berdaya adalah tugas kemanusiaan yang sangat mulia. Secara politik, strategis dan moral kebijakan yang mengutamakan perlindungan bagi manusia yang lemah dan tak berdaya adalah kebijakan yang dibenarkan dan memiliki legitimasi

Beragam strategi untuk pemajuan HAM Korea Utara antara lain adalah:

- Meng-engage dan mengakhiri isolasi diplomatik terhadap Korea Utara. Sejak tahun 2000an Korea Utara secara bertahap mulai ikut serta sebagai observer, maupun peserta dalam berbagai pertemuan internasional baik yang diselenggarakan PBB, ASEAN, ADB. Selain itu Korea Utara juga telah menormalisasikan hubungan diplomatic dengan Australia dan Italia
- Tiongkok, Jepang, Korea Selatan, Rusia dan Amerika adalah negara kunci yang sering dianggap bisa mempengaruhi stabilitas politik dan ekonomi di semenanjung Korea. Jika selama ini dialog dengan Korea Utara lebih fokus pada persoalan politik keamanan, maka dialog harus diperluas dan membahas juga kebijakan perbaikan HAM di Korea Utara sebagai agenda tanpa melinkage dan membuat conditionality antara HAM dengan diplomasi internasional mereka
-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tetap menjadi kebijakan yang diperlukan untuk Korea Utara.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yang bentuknya non cash akan lebih bermanfaat dan bisa langsung dirasakan masyarakat

- Monitoring wilayah perbatasan Korea Utara dengan Tiongkok, Russia, Jepang, Korsel dan memastikan bahwa pelintas batas tidak dikembalikan ke Korea Utara serta perlindungan terhadap pengungsi itu di Tiongkok, Jepang, Russia . Negara Negara tersebut secara parallel juga melakukan koordinasi dengan UNHCR
- Meng- engage Korea Utara melalui kunjungan parlemen, senior officials, kalangan masyarakat sipil dalam workshops, seminar, dalam beragam isu Peace, Demokrasi, Human rights dan institutional building maupun kerja sama ekonomi, social dan kultural lainnya
- Sejauh ini Indonesia dan Korea Utara secara historis memiliki hubungan sejarah yang baik dan hubungan emosional yang dekat sejak 1955 (Bandung Conference). Spirit deklarasi Bandung anti kolonialisme, penghormatan pada identitas dan hak asasi manusia untuk merdeka dari segala bentuk penindasan, misalnya masih tetap relevan hingga hari ini . Pesan ini harus terus disuarakan. Selain itu peran Indonesia sebagai *country rapporteur* untuk HAM Korea Utara pada saat ini bisa jadi momentum untuk harapan bagi perbaikan kondisi HAM Korea Utara.
- Penulis adalah Pengajar Depertemen Hubungan Internasional FISIP- UI

〈번역문〉

북한의 인권 : 몇 가지 도전

|| Ani Widyani Soetjipto*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조교수)

본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요, 북한의 인권 상황과 상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¹⁾

I. 북한의 인권 상황

유엔 인권 기본헌장과 국제적인 인권 기관 및 규제 기구 등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기관과 기구들은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대한 조약을 조인한 국가이다. 2013년 북한은 또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조인했다. 인권에 대한 원칙은 2009년 북한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한 인권에 대한 모든 규제 및 규정들은 실제적으로 그 대부분이 북한의 경험적 상황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유엔기구와 NGO의 각종 보고서들, 그리고 인권운동가와 북한에서 근무한 외교관들 등의 보고서와 기록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유감스러운 정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권을 위배하는 여러 행태가 거대하고 조직적인 규모로 벌어지며 또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동과 여성, 이민자, 난민, 사회운동가,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 필자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2014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백서를 보면 북한의 인권 위배 행태는 수십 년 동안 별 어져왔으며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3백만여명의 희생자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반 이외에도 경제적 권리를 위배하는 행태 또한 북한의 국민들은 겪고 있는데, 즉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북한의 국민들은 의복, 식량, 교육, 직업, 건강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등은 북한에서 이미 일상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II.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반응

이와 같은 심히 유감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실행되어 왔으나 그 노력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며 북한의 인권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양한 국제적 반응, 예컨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제안이 제시되었다. 2013년 유엔의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2014년 2월에 공개된 바 있다. 그 이전,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에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을 지정했다. 같은 해 미국 국회도 북한 인권을 위한 특별 사절단을 파견하여 인권의 원칙들은 미국과 북한의 양자관계에서 반드시 존중받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유엔에 ‘북한에서 인권 침해는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violation of human rights do not take place and are unthinkable in North Korea*, Lee tae yon,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East Asian Review, vol. 5, no 4. Winter 1993, p. 66)’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북한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의 방문을 거절했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주체’는 북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잠재성을 지닌 민주주의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라는 의견을 지니고 있다. 물질주의와 상업주의는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이 항상 자유 시장 개혁과 자유화를 도입하기를 제안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자유화와 자유 시장 개혁, 그리고 국제 사회와의 접촉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Ⅲ.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접근

전혀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새롭고도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보호가 실행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바램이며 이는 북한과 양자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항이다. 힘없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사용은 인간의 매우 고귀한 의무이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인간에 대한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은 매우 올바른 정책이며 합법성을 지닌 것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격리를 끝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점진적으로 유엔, 아세안,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주최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이탈리아, 호주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한반도의 경제 정치 안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나라이다. 이제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정치적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인권 개선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는 상기 국가들의 국제적인 외교와 인권 문제 간의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 국제적 인도주의적인 도움은 계속적으로 북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현금 이외의 국제적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더욱 유용할 것이며 북한 사회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다.
-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 지역,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일본과의 국경 지역, 한국과의 국

경 지역을 모니터링하며 국경선 통행인이 북한에 되돌아 가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중국, 일본, 러시아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유엔 난민 고등 사무소와 함께 병렬적 코디네이션을 실행해야 한다.

- 의회 방문, 시민사회 방문, 고위 공직자 방문 등을 통해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형태로 북한과 관계를 맺어 평화, 민주주의, 인권과 인권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를 공유한다.
-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1955년 이래 (반둥회담)로 역사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고 매우 가까운 감정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반식민주주의,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인권 존중 등의 반둥 선언 정신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국가(*country rapportour*)로서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해 기대와 희망의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

<원문>

INDONESIA DALAM ORGANISASI INTERNASIONAL UNTUK MEMBANTU ADVOKASI HAM KOREA UTARA

■ Haris Azhar (Coordinator of KontraS)

<Contents>

- ASEAN-3 (EAS) / ARF
 - BRICS
 - South-south cooperation
 - Community of Democracies
 - KAA
 - Six Party Talks
-
- Indonesia memiliki pengaruh yang cukup baik di beberapa organisasi regional maupun internasional, salah satunya relasi kerjasama dengan Negara-negara yang memiliki nuklir yang tergabung dalam Six Party Talks yaitu Cina, Amerika Serikat, Korea Utara, Rusia dan Jepang dan Korea Selatan. Korea Utara sempat menarik diri dari Six Party Talks dan pada akhirnya menyebabkan hubungan yang tidak harmonis dengan Negara anggota dengan mengancam akan mengaktivasi kekuatan nuklirnya. Dikatakan bahwa Indonesia dapat memiliki sebuah peran sebagai mediator untuk perselisihan yang terjadi di forum ini dikarenakan Indonesia memiliki hubungan yang baik dengan Negara-negara anggota khususnya Korea Utara.

 - Sebaliknya, ketika itu Indonesia malah membangun hubungan yang kuat dengan

Korea Utara dan memiliki kerjasama ekonomi yang kuat dengan Negara tersebut sejak kunjungan Marty Natalegawa dan mengajak Korea Utara untuk bergabung dengan ASEAN Regional Forum. Pada ASEAN Regional Forum 2014 lalu Negara-negara ASEAN telah memberikan sebuah rekomendasi kepada Korea Utara untuk menghentikan pengaktifan senjata nuklirnya. Statement ini didukung dengan Negara-negara ASEAN+3 (East Asia and ASEAN) yaitu Cina, Jepang dan Korea Selatan dan juga Amerika Serikat. Dapat dikatakan bahwa Negara-negara kerabat ASEAN dan Negara anggota ASEAN ini sendiri mengutuk segala kelakuan dan tingkah yang dilakukan oleh pemerintah Korea Utara, tetapi pada momen seperti ini sayangnya Indonesia pun bersikap netral dan masih belum vocal untuk menyuarakan demokratisasi dan penegakan isu HAM di Korea Utara

- Indonesia menjadi pelopor dari Konferensi Asia-Afrika yang membuat Indonesia memiliki peran yang baik dalam organisasi ini. Semangat konferensi yang dirujuk dari Piagam PBB ini untuk memajukan kemanusiaan dan untuk mencegah adanya dominasi kekuatan dan tekanan antara Negara yang satu dengan yang lain. Tahun ini, KAA yang ke 56 akan dilaksanakan di Bandung dan Kim Jong Un akan hadir. Momen ini dapat menjadi salah satu kesempatan apabila pemerintah Indonesia mulai saat ini dapat menjalin engagement dengan Negara-negara lain yang tergabung dalam KAA untuk merekomendasikan demokratisasi dan pemajuan nilai HAM di Korea Utara
- Dengan berperan lebih baik lagi dalam Community of Democracies, Indonesia akan bisa dapat lebih mudah untuk menjadi motor bagi pemajuan demokratisasi dan HAM di Korea Utara. Mengingat CD tidak hanya tergolong sebagai organisasi Negara dengan Negara saja, tetapi bagaimana hubungan Negara dengan CSO di negaranya dalam pemajuan demokrasi. Dengan mengikutsertakan people power dalam isu ini maka jaringan untuk pemajuan HAM dan

demokratisasi di Korea Utara lebih mudah.

- **Kelemahan** : Dari berbagai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dimana Indonesia tergabung di dalamnya dan juga Indonesia memiliki sebuah hubungan yang sangat harmonis dengan Korea Utara satu kelemahan yang pasti akan selalu muncul yaitu adanya bentrokan dari hak Negara dan hak asasi manusia itu sendiri. Hak Negara (kedaulatan) yang menjadi tembok besar yang selalu dijadikan alasan bagi Negara untuk tidak menjalankan rekomendasi dari Negara lain dikarenakan kedaulatan tersebut. Salah satu contohnya yaitu asas yang berlaku di ASEAN dengan non-intervention nya yang menjadikan Negara lain tidak dapat campur tangan dengan permasalahan yang ada di Negara lain, hal ini seringkali dijadikan alasan bagi Negara anggota ASEAN maupun INGO lain untuk mencari aman.

〈번역문〉

국제 기구 속의 인도네시아, 북한 권리 옹호

▮ Haris Azhar (KontraS 코디네이터)

〈내용〉

- ASEAN-3 (EAS) / ARF
- BRICS
- South-south cooperation
- Community of Democracies
- KAA
- Six Party Talks

• 인도네시아는 몇몇의 국제기구와 지역기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6자 회담(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미국, 중국)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이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탈퇴하여 결국에는 핵무기를 내세워 6자 회담 국가들을 위협하여 회담 국가들과의 평화롭지 못한 관계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하여 6자 회담의 포럼에서 발생한 반목을 해결하는데 있어 인도네시아는 중재자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 반면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마르띠 나따레가와와의 방문 이래로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매우 굳건한 관계를 맺고 북한과 경제 협력 관계를 형성했으며 북한을 아세안 지역 포럼에 동참하도록 권했다. 2014년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도록 조언했다. 이 성명은 ASEAN + 3 (동아시아와 아세안) 즉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은 북한

정부가 행한 조치와 행동을 비난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북한의 인권을 바로 잡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이는 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아프리카 회담의 창립국이며 이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게 했다. 유엔 현장에서 참고한 회담의 열정과 의지는 인류애를 성장시키고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어느 한 국가가 타 국가에 대해 권력을 주도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있다. 올해 제 56회 아시아-아프리카 회담이 반등에서 개최되며 김정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담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가치 성장과 민주화를 조언하는 일에 있어 아시아-아프리카 회담 회원국가들과 함께 양가주망을 형성할 기회이다.

-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의 일원으로서 인도네시아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성장을 위해 보다 쉽게 모터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 공동체(CD)는 오직 국가들간의 기관만이 아니라, 국가와 그 국가의 시민사회조직(CSO)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적극 동참시켜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다.

• 문제점 :

인도네시아가 속해 있는 여러 정부간 기관 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발생할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가의 권리와 인권간의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권리(주권, 통치권)은 항상 어느 한 국가가 타국가에게 조언을 할 때 마주치는 큰 벽이 되고 있다. 타국가의 주권과 통치권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세안의 실행원칙이 비간섭(non-intervention)인데, 아세안 회원국들은 타국의 문제에 대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는 종종 아세안 회원국가들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에게 있어 좋은 구실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회의록

본 회의록은 현장에서 한국어로 동시통역된 음성을 녹음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발언 내용과 일부 다르게 통역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 미제공 및 녹음상태 불량 등으로 녹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생략)으로 표기하였습니다.

1. 기자간담회

○ **윤남근(인권위 북한특위위원장)**: 북한인권 문제는 결국 국제적인 문제이고, 북한은 ASEAN 국가들과 상당히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행사를 갖기로 했고, 또 하나 제 옆에 바로 앉아 계신 Darusman 위원께서 작년에 유엔 COI(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COI 유엔보고서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Darusman 위원의 출신국인 이 나라에서 행사를 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반동회의(Asia-Africa Conference) 이래로 제3세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번 행사는 그 북한인권 문제를 제3세계까지 확장시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아세안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아세안 국가, 그중에서도 라오스-태국을 통해서 한국을 오게 됩니다. 이 아세안 국가들은 탈북자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행사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은 사실은 2004년부터 매년 행사를 가져왔는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행사를 가졌고, 2011년도에는 EU와 연합해서 브뤼셀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에서 행사를 가졌고, 2014년에는 베를린에서 베를린자유대학과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네, 감사합니다. 윤남근 위원께서 오늘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소개해주셨고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데 사이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막 도착하신

한 분의 게스트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 위원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 박수)

○ 사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엔북한특별보고관이신 Marzuki Darusman의 소감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Marzuki Darusman(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네,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회 여러분들과 미디어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간담회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의제를 갖고 진행할지 배경에 대해서 윤남근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취해 온 조치와 이력, 그리고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인권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본 의제를 가지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개최를 하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북한인권 문제를 가지고 일련의 어떤 보고가 보고되었는지 또 윤남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해결점을 공동으로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의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인권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늘 간담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인권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폭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인권향상을 시킬 수 있고, 저는 특별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저의 관점에서의 이런 현안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차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특히 북한과 양방향으로 이런 국제적인 이슈를 서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소감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뒤에 있습니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북한대사관: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누가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당신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기보다도 우리나라를 고향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방문한 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여기 모여서 일방의 말을 듣고 논한다는 것이 우선 이것은 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논의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우리나라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참가한 기회에 우리나라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너무 일방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말도 한번 전달했으면 합니다. 인권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한번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준비해서 온 동영상 자료를 여기서 돌려도 이롭겠는지 주최 측 쪽에 묻습니다.
- 사회: 지금은 미디어 컨퍼런스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북한대사관: 언제 가능합니까?
- 사회: 오늘 이 자리는 미디어 컨퍼런스임을 양지해 주시고요. 이후에 의논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북한대사관: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온

동영상 자료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견해와 입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발언권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객석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대에 계신 분들 중에 답변을 하실 분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남근(인권위 북한특위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북한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자리입니다. 북한대사관 쪽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싶거나 한다면 북한대사관 쪽에서 행사를 주최하면 우리가 가서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질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대사관:** 우선 질의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주최자 측에 이미 발언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 요구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쪽의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쪽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소리입니다.
- **윤남근(인권위 북한특위위원장):** 하여간, 이 자리는 그런 취지로 마련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인권실태는 공정하게 유엔 COI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작년에 그 자료를 발표했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유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북한을 좀 더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 하는 크런 것을 논하는 자리지 북한대사관에서 와서 북한 나름대로의 정치선전이나 견해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대사관(케이시 메이시): 안녕하십니까? 미국대사관에 케이시 메이스입니다. 조금 늦게 왔지만 …(생략). 질문은 아니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료들은 북한인권 문제 그리고 COI 보고서가 북한 내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홍성필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홍성필(연세대학교 교수): 제 이름은 홍성필입니다. 저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략). 민주주의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며, 가능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중략). 그렇지만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인권문제를 같이 얘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고, 아시아 인권과 협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앉아계신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 고영태(KBS 방콕특파원): 저는 KBS 방콕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고영태 기자입니다. 저기 패널로 계신 김광진 박사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있고, 이들이 지금 암묵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으로 자기의사에 따라서 송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어떤 협력관계가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진다면 갈등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또 자신 있게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한국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협력이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오후 세미나 발제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가 거의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협조나 그리고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가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제3국으로 아주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생명의 위협이나 많은 인신매매, 그리고 노동 착취와 같은 인권유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이제 국제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많은 인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을 받고 시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질문자: 제 생각에는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갖는 게 좋겠지만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쭙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떠한 인권유린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탈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인권유린 아니면 납치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포럼을 주최한 목표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인권회복을 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북한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사회: Marzuki Darusman 보고관님, 질문에 답변주시겠습니까.

○ Marzuki Darusman(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감사합니다. 심포지엄 개최 전에 심포지엄에서 나올만한 의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유엔에서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유엔에서 발표되지 않은 그 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10년간 이슈화 되어 있는데요. 2013년 유엔에서는 모든 관련된 보고문, 최근 10년 동안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인권 관련된 보고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유엔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자료는 유엔보고 자료이고, 두 번째는 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저희가 보고문을 보고받고 또 작성되고 있습니다. 난민수용소에서 미국이나 도쿄 각 나라로 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녹음해서 그 녹음된 녹취자료, 녹화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북한정부에서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모두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또 본인들이 인권유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관해서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사실 확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국제사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실로 북한에서는 유엔의 (발표)사실을 인정하곤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그리고 또 국제기구에서는 그런 인권유린도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공개를 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처벌들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분께 최근 보고된 유엔 보고자료를 토대로 함께 토론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어떤 인권유린 문제와 안보적인 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권유린, 그 다음에 인권침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여성차별, 여성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들이 본국을 버리고 제3국이나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는가, 망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들이 COI에 본인들의 현황을 보고하고 알려진 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사실 이것은 본 행사가 아닙니다. 미디어 컨퍼런스 이고요. 오후에 본 행사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잠시 후 점심식사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오후 1시부터 본 행사 국제심포지엄이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2. 개회식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과학원(LIPI), 인도네시아 인권 위원회(Komnas Ham),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부(AICHR-Indonesia)가 공동주최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회식 공동사회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심상돈입니다.

- 사회(Dian Anshar): 저는 오늘 행사의 공동사회를 맡은 다이안 안샤르입니다. 현재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

권위원회와 인도네시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뜻 깊은 행사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는 아세안지역의 중심인 이곳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니 리시버의 채널을 조정하여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먼저 한국 측 주요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분씩 소개할 때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입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8월부터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법과교수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현병철 위원장님은 2009년 8월부터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법과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유영하 상임위원님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유영하 상임위원은 2014년 3월부터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검사 및 법무부 인권옴부즈맨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1세션을 맡으실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라종일 교수님은 주일한국대사, 주영한국대사,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1세션 발제를 해 주실 권오곤 유고 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이십니다.

(참석자들 박수)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시간관계상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세션에서 사회자가 따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소개는 아세안정부관 인권위원회 Dian Anshar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 Dian Anshar(AICHR-Indonesia): Hafid Abbas 인도네시아 인권위원장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 Dian Anshar(AICHR-Indonesia): 오늘 기조연설을 해 주실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입니다. 2010년부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인도네시아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 Dian Anshar(AICHR-Indonesia): 제1세션의 발제를 해 주실 Adriana Elisabeth 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입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션의 발제를 해 주실 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이제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하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현병철(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본 행사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도네시아과학원,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인도네시아 정부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COI조사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 행사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기조연설을 해 주실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전 세계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이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구체적 행동의 차원을 나누어서 접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원입니다. 인권의 개념과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역사를 통해 축적하고 협의해 온 보편적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치적·사회적 특수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인권의 개념과 기준을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적용한다면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자리매김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 북한에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개념과 기준이 국제사회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때로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위험도 안고 있고 다수집단에 의해서 소수집단의 인권이 침해되기 쉽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항상 국가권력과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하고 다수보다는 소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따

라서 저는 북한이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와 활발한 인권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인권개념과 기준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차원입니다. 이것은 대상과 주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시아라는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의 근본적 주체는 북한 당국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북한당국이 북한인권의 개선 주체가 될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북한과 인권대화 및 협력을 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남북간 인권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통일 후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의 중심국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남북간 인권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지역 탈북자 인권문제를 아세안의 의제로 채택되도록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지역적 접근방식의 하나로 아시아지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별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해 해당국가 스스로 또는 양자관계를 통한 해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단위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현재 아시아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모임인 아시아태평양포럼이 있고, 10개 아세안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시아지역단위의 인권기구나 협의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의 탈북자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난민, 이주노동자의 인권, 인신매매 등의 인권문제는 국가간 또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한

국, 북한, 일본, 중국 등을 모두 포괄하는 아시아지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포함된 아시아지역 차원의 인권 기구가 설립된다면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차원의 인권향상에 특히 토론회 등 두 번째 세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14년은 COI보고서 발표 및 유엔인권이사회 채택,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및 북한인권 상황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정식 의제 채택 등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일련의 진전된 과정들이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언젠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얼음을 점점 녹여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박수 부탁드립니다.

○ Dian Anshar(AICHR-Indonesia): Adriana Elisabeth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 Adriana Elisabeth(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인도네시아 한국 조태영 대사님, 발음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인도네시아 북한참사관님, 그리고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Hafid Abbas님,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 Rafendi Djamin님, 그리고 모든 발표자들과 사회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오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환영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권위원회와 협력을 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

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사숙녀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심포지엄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러나 지금 인도네시아가 홍수도 있고 비도 계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까이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심포지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인권위원회가 먼저 추진을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정부연구기관 중에 LIPI가 있는데요. 보다 수용 가능한 그런 시각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지만 이 심포지엄은 북한의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무엇보다 더욱 친밀한 협력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을 얘기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양국 간의 접근뿐만 아니라 다국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보다 다국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 Dian Anshar(AICHR-Indonesia): 다음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의 Hafid Abbas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Hafid Abbas(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조태영 대사관님 그리고 북한참사관님, 그리고 Adriana Elisabeth님, 하심잘란 씨 그리고 저희의 동반자 하비사멜, 그리고 오늘의 발표자들에게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저는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LIPI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측 기관들이 협력해서 개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와 한국 인권위원회가 상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략들이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의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협력관계는 양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세안지역입니다. 아세안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제일 많고, 지역적으로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든 발전들이 아세안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이점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무슬림국가들에서 즉,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이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한국이 무슬림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비동맹)멤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만큼 이슬람국가들 간의 그리고 아세안 국가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인권위원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개최하는 이러한 심포지엄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하게, 가능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기관이 함께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탈북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그런 문제해결입니다. 다른 이슈가 있다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숫자가 꽤 많은데요. 저희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인력교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력이 한국 가서 인턴십을 하거나 그 반대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와 한국 인권위원회가 양국 간의 협력관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좋은 성과가 맺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성공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아까 소개드릴 때 아주 귀중한 참석자를 한 분을 소개하지 못했는데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조태영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기념촬영 시간을 가진 후에 기조연설과 본격적인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분을 포함한 주요 내외분과 패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조연설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활동했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위원과 함께 COI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께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특별보고관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 Marzuki Darusman(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과학원과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Hafid Abbas와 Rafendi Djamin 위원, 여기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한국 인권위원회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과학원과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에게도 오늘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인권위원회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인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작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제네바에서 보고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엔 북한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60개국의 총회 회원국을 뉴욕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불행히도 이루어질 수 없었고, 위원회는 기념비적인 기조를 통해 가능한……(생략)

그 당시에는 아무런 결과를 유추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애쓰신 점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5년 3월 북한의 인권에 대해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때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며, 각 지역 협력자들과 함께 많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조금 더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모든 시스템들이 활발히 활동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 Dian Anshar(AICHR-Indonesia): 기조연설을 해 주신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4. 1세션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이어서 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션의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중요한 회의 제1세션에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책임도 느낍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말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회자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능하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자로서 이 세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두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들이 2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고, 또 토론으로 나오시는 네 분이 10분씩 토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플로어에 개방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또 토론 도중에 나온 질문이나 혹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 발표자들의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하고 절차를 엄숙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소신이 이 회의는 어떻게 하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토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치의 논리, 특히 집권하고 있는 권력의 논리하고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인권의 문제에 관해서 토론과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 세션의 사회자로서 이것이 그저 토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인권상황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긴 말씀 줄이고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토론에 참여하시기로 되어 있는 Adriana Venny Aryani씨께서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상임위원이신데 지금 아마 교통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오시면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기로 하고, 어제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까지 오는 동안에 자카르타 교통사정을 봤는데 서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교통에서 늦어지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일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발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표는 권오곤 관사님이신데,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잠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시는 분이 Adriana Elisabeth 여사이신데 인니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토론으로는 홍성필 교수이신데 서울에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두 번째 토론자는 백범석 교수님이신데 경희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그리고 Mangadar Stumorang, Parahyangan 대학교 정치사회대학원장님이십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이제 더 긴 말씀 없이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린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께서 COI보고서에 나타난 반인도범죄를 중심으로 20분간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권오곤(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존경하는 현병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 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님, Hafid Abbas 인도네시아 인권위원장님, Adriana Elisabeth 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님, 대한민국 조태영 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심포지엄에 귀한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과학원, 인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 동안 늘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늘은 오전에 비가 왔습니다만 이 아름다운 자카르타에서 올 한해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기분입니다. 제가 원래 연락받기로는 인도네시아어하고 한국어로만 통역이 준비된다고 해서 한국어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책, 언론기사, 다큐멘터리, 논문, 사진, NGO 보고서 등이 많이 나

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COI리포트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설치하고, 기능적으로도 그 독립을 보장받은 COI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보고서는 그 신뢰와 권위의 측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인정받을 것이고, 비단 북한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전반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과 도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COI 위원이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Marzuki Darusman님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OI리포트는 그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요지가 발표되었고, Darusman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소개를 피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난 14년간 국제형사재판에 참여해 온 재판관의 입장에서 북한에서의 인권관련 범죄가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가장 큰 재판은 그 재판에 소요된 시간이 너무 길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첫 사건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사건은 4년여 동안 재판이 계속됐음에도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사망해서 결실을 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끝나고 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장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라도반 카라지치’ 사건도 예상대로 올해 10월말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면 첫 증인신문을 시작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데까지 약 4년 반 정도 걸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리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관측에서 기소하는 공소사실이나 그 배경되는 사실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로세비치 사건을 예로 들자면, 그 밀로세비치 1명을 기소하는데 사실상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개별적 범죄행위 전체를 10년 동안 일어났던 세기의 전쟁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모든 범죄사실을 기소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건이 아니라 사실상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한 번의 입증과 방어, 판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

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후시 북한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을 준비하게 될 경우에도 세세한 모든 사실이나 배경이 아니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리고 중요한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증인의 진술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작업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tandard proof' 입증의 정도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유엔 산하에 많은 사실조사기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fact-finding bodies와 마찬가지로 COI도 그 보고서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입증의 증거는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기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100명의 진범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을 수집하고 보전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나 증거에 대해서 재판관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겁니다.

따라서 가령, 피해자의 증언을 채집하는 경우에 유도심문을 한다거나 편집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증명력이 떨어지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증인의 진술을 정보기관이 미리 파악해서 수집해 놓은 기존 정보에 합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정단체의 어젠다에 끼워 맞춘 증언이나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해서 출간한 책도 충분한 증명력을 보장받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단체가 어떤 나라에서 탈북자를 증언자로 불러놓고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기자들 앞에서 긴장해서인지 말을 더듬거리거나 기존에 했던 말을 제대로 기억하

지 못하고 할 때 옆에서 통역을 겸했던 회의 주최자가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에 기초해서 그 사람 말을 고쳐주거나 그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던져주는 적을 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외부기자들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증언을 유죄증거로 제시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옆에서 증언을 유도한 점 때문에 증언의 증명력이 훼손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증언의 개시, Discovery라고 합니다만 증거개시 제도와 관련해서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형사소송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한국의 형사소송제도를 보자면……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거 개시하는 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거개시 제도는 거의 선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서도 거의 많은 나라가 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증거개시 제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형사재판에서 검찰측에서 부르고자 하는 증인과 관련해서는 그 증인이 예전에 작성하거나 진술했던 모든 진술서를 피고인 측에 모두 교부해 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측에서 북한 탈북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탈북자가 탈북한 후에 작성했던 모든 진술서를 피고인 측에 교부해서 관리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는 것, 특히 인터뷰 내용을 전부 녹화하고 기록하는 등 투명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COI보고서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북한에게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렇다는 경우에는 그 고위급 지도자들이 자국 내에 국제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 실무의 입장에서 보면 고위지도자들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들은 통상 그러한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Command Responsibility’, 그것은 ‘superior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상급자의 책임을 위한 법리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고위지도자가 자기 부하들이 한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라면 김정은 씨나 또는 고위지도자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훗날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북한의 고위지도자들에게 국제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금에서부터라도 그들에게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또는 특별보고관계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COI리포트의 내용과 같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아울러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향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반인도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형사 소추한다고 할 때 어떤 재판소에 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OI리포트는 ICC와 같은 북한의 반인권범죄 처벌을 위한 임시재판소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ICC에 회부하는 것은 ICC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적 관할권의 한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조약 제11조에 따라서 ICC는 로마조약이 발효된 2002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문제만 다루는 임시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단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서 필요한 만큼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재판소의 형태나 절차,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임시재판소들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 때문에 재판소 설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북한정권이 유기되고 있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해서 재판이 개시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시재판소를 설치해 놓은 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나 하는 고민도 생길 것입니다. 유엔안보리의 의결로 ICC에 회부하든 또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든 이는 모든 유엔헌장 제7장 챕터7에 따른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리의 권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보리가 제가 있는 ICTY 또는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인 ICTR, 그리고 그 배경이 된 유고슬라비아사태나 르완다사태, 그리고 리비아사태를 ICC에 회부하게 된 배경에는 모두 전쟁 내지는 무력충돌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안보리에서의 거부한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바로는, 현실적인 무력충돌이 없는 입장에 있어서 이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더 정치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문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현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재판소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정권이 붕괴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국으로 흡수 통일이 된다면 피고인들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은 피고인들의 신병이나 범죄지, 기타 증거들이 한국정부의 주권 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이 재판권과 신병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형사재판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한국의 협조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와 운영에……(생략)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이 될지, 안 될지, 통일이 된다면 언제 될지, 어떤 형태로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국조차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문제는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뜨겁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문제, 전쟁 억지문제 여러 가지가 정치적·안보적으로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응징하는 국제재판소 설치가 때로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불안정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지 모릅니다. 국제재판소를 한 번 설치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국제재판소가 그 속성상 국제정치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국제 정치적·안보적 상황에 따라서 신속적으로 재판소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도 없다는 점이 한국을 비롯해서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조차도 북한의 반인권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재

판소 설치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래에 어떠한 통일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정의, justice와 책임(accountability)을 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합과 화해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형사책임과 소추를 거론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의를 논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평화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의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정의가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Terima kasih.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권오곤 판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을 20분 정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외에 발표내용이 정말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인도범죄를 심판하는 문제하고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증거채취나 증거의 보존, 기소유지,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토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Adriana Elisabeth 정치연구센터장께서 아시아지역의 반도인범죄 사례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Adriana Elisabeth(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발표자보다 상당히 초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결과에 의거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기단계의 생각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사실은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주제로 정확히 발표를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북한인권 관련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인권이라는 문제가 독립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이라는 것이 클래식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권관련 개선이 많은 국제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자님께서 COI를 통해서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과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조건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이슈,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권침해 그것이 범죄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인권침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인권침해를 위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정치·보안·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관련 문제가 사실 제한적인 문제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의 위치나 이런 간단한 문제로 간주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인권 관련 문제가 사실은 수직적인 문제, 충돌적인 문제에 밀접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와 충돌하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회에서 기업과 사회와의 충돌이 있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인권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씩 저의 접근방법을 소개로 하자면, 'level-up analysis'는 현지 접근, 로컬접근, 그리고 지역적인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의미하는 것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차원 그리고 국제차원 인권문제들은 서로 관계가 있으므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discuss analysis 관련해서 어떻게 이러한 접근을 사용함으로써 발견된 그런 팩트들을 예를 들면 COI가 작성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국제적으로 역동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는 모든 측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인권문제 하나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권에 관련 기관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인권자체는 사실은 매우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접근하는데 있어서 ‘offence human rights’ 그리고 ‘defence human rights’가 있습니다. defence human rights 같은 경우에는 타국이 행하는 인권침해, 그리고 defence human rights 같은 경우에는 결의안을 체결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 헌법에 인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도적인 정권이 있을 때 권위주의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필리핀 같은 데서는 종족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충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저항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충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시가 되면서 인권문제가 일부 해결이 되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안보와 동아시아의 인권 및 지역안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의 인권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간에 문제가 있다면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양국 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나라에 대한 통일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북핵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에 국가 간에 영역의 충돌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의 문제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이 주체사상 자체는 국가의 독립성 자체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제도는 다음과 같이 인간성의 범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나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권 위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왜 유지를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되겠지요. 아마도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실은 북한은 그런 빈곤층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복지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

졌습니다.

다음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개발 문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권력과 힘의 박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외교방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1945년 국가 헌법, 그리고 1999년 법률 제39조에 보면, 인도네시아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이 인권문제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무부, 그리고 여성인권 강화 및 보호부가 있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있음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인권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와 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인권문제는 인도네시아는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기권의 상태에서 찬성이 되도록 변경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후속조치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북한인권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양국 간에 협력을 통해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 측면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진, 충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리더십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과제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북한 통일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관계회복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관계회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화,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도 파푸아지역과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실행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폐인 내용은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시급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오늘은 참 사회를 쉽게 합니다. 보통 사회를 보면 시간을 넘겨서 발표를 하고 시간을 넘겨서 발언을 하는 통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오늘은 발표하시는 권오곤 판사님이나 Adriana Elisabeth 정치연구센터장께서 시간을 모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를 보다가 늘 아쉬운 것은, 여기서만 토론이 되고 시간 제약 때문에 청중들에게 발언이나 질문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늘 애석했는데 오늘은 발언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청중들에게 논평하고 질문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청중들이 아주 많고 관심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청중들 앞에 메모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메모지에 이때껏 발표한 분들 혹은 토론한 분들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논평사항이 있으면 미리 적어서 이 위에서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질문지에도 반드시 본인의 성명하고 자기 직장, 직위 같은 것을 써주시면 토론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지를 취합해서 토론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는 경우에는 청중이 너무 많고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조금 남아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토론의 규칙을 정했으니까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시는 사이에 기다리던 마지막 토론자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Adriana Venny Aryani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상임위원께서 어려운 교통 상황을 무릅쓰고 여기 도착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Adriana Venny Aryani 씨에게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해 주십시오.

(참석자들 박수)

○ Adriana Venny Aryani(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사회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심포지엄에 늦게 도착해서 늦게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그러면 이제부터 두 분 발표자에 대한 논평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해 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홍성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홍성필(연세대학교 교수): 네, 감사합니다. 발표시간도 맞추고 잘해 주셔서 토론이 아주 잘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아주 깊이 이야기를 아주 다른 주제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짧게 이해한 바로는 권오곤 판사님은 국제재판을 할 경우에...(생략). 그래서 어떤 형태건 재판을 해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 다만 신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Adriana Elisabeth 선생님은 북한인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은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고,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해서 지역, 국제사회에 정치·경제·환경과 함께 대화에 초점을 두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ccountability,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International...(생략) 이런 문제에 관한 제 생각과 두 번째는 왜 북한인권 문제가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런데 또 최근에는 왜 이렇게 빨리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까지 급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가, 상황이 이렇게 급히 바뀌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Marzuki Darusman 보고관계서도 이전에 있을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주제별 접근을 통한 별도의 전략들을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큼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인권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 인권의 문

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COI가 만들어진 것은 아까 권오곤 판사님 말씀대로 모두 무력충돌(armed conflict)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리비아, 수단... 북한만 유일하게 평화시에 만들어진 commission of enquiry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권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번 좌절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북한문제가 90년대부터 얘기되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 안에서부터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국가별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북한인권을 버려뒀었는데 갑자기 지난번 비릿 문타폰 보고관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Marzuki Darusman 보고관님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COI가 만들어지고, COI리포트가 나오고, COI를 비롯해서 반인도적범죄에 대한....(생략). 북한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기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듣기로 Marzuki Darusman 보고관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COI 만들 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arzuki Darusman 보고관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고,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법조인으로서의 객관적 경력이 COI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 자체에 대해서도...(생략).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유엔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20년 넘게 실질적으로 사실 다루어 왔습니다. 첫 번째 결의는 96년도, 9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대화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또 유엔보고관들, 그리고 특히 EU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경부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들었고, 또 EU도 북한하고...(생략). 그게 지난 20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COI보고서, 이번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엇이나면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끌여가기에는 북한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또 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Darusman 보고관님께서 유엔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실질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북한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권오곤 판사님께서...(생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COI보고서와 역할, Marzuki Darusman 보고관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COI보고서가 앞으로 있을 앞으로 있을 재판이건 또는...(생략). 만약 COI보고서가 없었다면 그리고 보고관들의 보고가 없었다면 향후에 재판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Accountability도 중요하지요. 모두 다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생략).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생략). 정치범수용소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재판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야 되고, 이산가족들이 만나야 됩니다. (생략)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COI리포트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에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COI리포트에서 Accountability 문제와...(생략). 이제부터 제대로 인권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COI리포트가 예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예시를 캡처하고 인권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인권침해가 없다고 하고, 인권침해를 생각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생략)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이 백범석 경희대 교수님 토론순서인데 조금 비껴서 Mangadar Sltumorang, Parahyangan 대학교 정치사회대학원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Mangadar Sltumorang(Parahyangan 대학교 정치사회대학원장):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driana Elisabeth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Darusman씨의 연설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리포트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오곤 판사님이 발표하신 법적절차에 대해서 직접적인 맨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lisabeth님께서 발표하신 반인도적 사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누구의 책임인지 그런 정도의 인권침해가 누구 책임 하에 벌어졌는가라고 묻는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개념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 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제안은, 인도적인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대부분 북한을 정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비아 케이스나 수단 케이스나 유고슬라비아 케이스도 그들의 정부들이 합법적이지 않는 정부였습니다. (생략) 인권문제에 대한 두 번째 제안으로는, 국가가 너무 힘이 강력했을 때는 저는 마이클 커비씨의 코멘트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인권문제는 아나히와 짜라히의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아나히의 케이스는 합법적이지 않은 정부의 예입니다. 아나히의 합법적인 정부는 주권을……(생략). 이게 인권보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는 Elisabeth가 발표하신 아시아지역의 반인도범죄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이었는데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정부는 약한 정부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정부입니다. 독재정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권한이 핵위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안보에 관해서 특히, 핵위협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은 핵문제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은 이 핵위협을 이용하여 정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핵무기의 힘으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6자 회담이나 북한인권에 관련된 회의를 주장하지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관한 문제는 많이 보고되어 있고 충분히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

다. 아마 Marzuki씨께서 충분히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생략).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지만 이미 유엔보고서에서도 책임자에 대한 것은 명백히 규명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정부가 시민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실패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북한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정부의 강력한 정권은 인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인권보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인권보호를 얘기할 때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점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임시재판소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적인 문제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적으로 더 많이 포럼을 만들고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이번 심포지엄 같은 많은 심포지엄을 자주 만들면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북한 관계자들이 그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북한은 국제사회와 조금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세안 외 3자, 4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이런 정도의 포럼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시간을 조금 초과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토론이 나와서 앞으로 토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범석 교수님,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토론 부탁드립니다.

○ 백범석(경희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제형사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에 오랜 시간 기여해 오신 권오곤 재판관님 발제에 대해 토론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권오곤 재판관님께서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실제 국제사회의 역할, 특히 그간

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실제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질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향후 남북한 간의 통일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과도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민족의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관련하여 홍성필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은 제가 말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첨가할 부분은 더 없는 것 같고, 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인권 위원회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인권도 인도네시아 인권도 아닌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서 토론을 갈음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인권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권고하는 (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의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COI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인권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비롯한 그 누구도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현병철 위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북한정권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체제 변화라는 단순한 도식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이 인권침해 당사자임은 자명하지만 동시에 북한정권이야말로 결국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이 한편으로서 아시아지역 차원의 다자협의체제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은 2세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유럽,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과는 달리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발전의

역사적 행보를 보면 서구국가들의 발전 과정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국민들은 인권, 민주주의, 헌법적 권리라는 개념을 식민주의 또는 자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해 오면서 발전시켰고 받아들여 왔으며, 이러한 독특한 아시아의 인권규범 발전과정은 개별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협동·참여 그리고 활발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그리고 변화점들을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인권기구의 설립 내지는 인권메커니즘의 확립이야말로 매개체(intermediary)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내재화 또는 토착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나 개별국가가 국제기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거나 실제 할 수 없는 경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지역 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들은 그동안 개별국가들이 가지는 국제인권법의 수용에 관한 염려와 한계, 그리고 국내적인 인권문화를 충분히 반영해 왔으며,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의 점진적인 적용을 통해서 개별 아시아국가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발달을 위해 지역내 인권체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아지역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내지는 국가인권기구들 간에 협력과 발전이 지역내 인권체제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심포지엄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시아내 인권위원회는 아시아지역 내에 공통의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고,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1세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인신매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환경인권, 개발인권, 장애인인권 문제, 아동 및 여성폭력에 관한 인권문제 등 지역차원의 인권문제로서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공통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들은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이러한 내용을 자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인권위원회는 sub-regional 차원에서 지역인권기구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아세안, 동남아시아 인권메커니즘 발달과정을 통해 보면 4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국가 내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능력 내지는 의지가 없을 경우에 이러한 역내 국가인권위원회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차원의 접근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접근에 비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비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 내 국가인권기구들은 개별국가의 국가 내 인권체계를 강화하고 개별정부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지역인권 차원의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지역내의 인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위원회를 통한 지역내의 협력과 대화와 발전이야말로 북한인권 문제에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백범석 교수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잘 지켜주는데도 시간이 조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 플랫폼 이외에도 청중들에게 질문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주최 측이 허락을 해 주시면 55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세션을 한 5분 더 연장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 더 연장할 테니까 조금 전에 부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이나 논평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지에다 적어서 이 플로어에서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토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 세션 벽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문제는 어떤 정부의 실책을 이야기하거나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인권위원회가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슨 정부 대 정부의 이야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히 집권하고 있는 권력의 논리에 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질문이나 논평을 작성하실 때도 그 기본적인 문제는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토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driana Venny Aryani,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마지막 토론을 해 주시고, 이 토론이 끝나면 발표자들께서 토론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한 반대토론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청중들 중에 질문지를 써내신 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 Adriana Venny Aryani(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상임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5월에 설립되었고요. 그때 당시 그런 참사가 발생하였는데요. 국가개혁이 일어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대안 또는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워진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그때 당시 강간당한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령 제181호와 제65호에 의거하여 여성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제60호에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여성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 여성인권위원회의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성폭력이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폭력의 모든 형태의 노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 제65호 대통령령을 보시면 여성인권위원회의 임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에 관련 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파푸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20만 건 넘는 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차원, 지역차원 그리고 국제차원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또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에 관련해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인권관련 그런 재해가 있다면 여성폭력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피해자를 돕는 그런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998년도 5월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말 크게 발생하였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일본이 여러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여성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 있는데 있어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실은 이러한 강간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관련해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간인을 납치하고 아동도 납치하고 여성도 납치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들어왔습니다.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위반은 여러 가지 결의안으로 그리고 협약서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이런 여성폭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5결의안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그 결의안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결의안을 계속 재발행을 했지만 완전하게 시행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 네트워킹 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세안태평양 여성 연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세안태평양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그런 네트워킹이 있는데요. 아동과 여성권리에 대해서 그 안에 북한 여성 활동가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그리고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도덕적으로 국가들이 인권위원회를 보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합니다. 북한을 배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 인권 문제, 여성 인권 문제, 아동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가입니다. 특정한 관념을 근거로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지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네시아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이슈가 되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 공산당이 인도네시아에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국가차원에서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인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여성하고 어린이들, 약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부각 시켜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론은 다 끝났는데 발표하신 두 분께서 토론에 나오신 의견에 대해서 논평이나 혹은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오곤 판사님부터 하시지요.
- 권오곤(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특정한 질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더 더할 것은 없습니다만, Stumorang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제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 중에 전통적인 말, 독재의 경우 보다 아나키에서 아주 무정부상태에서 더 많은 인권위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는 동의하실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이 국제인도법의 최근의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한 가지 제 견해를 더할까 합니다. 정상적으로 인권문제(human rights issue)는 국내에서 정부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인권법의 이슈였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또는 'IHL'이라고 불리는 것은 국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아나키 상태, 무력충돌상태, 전쟁상태에서 국민들이 상대방 군인이나 폭도들한테 무차별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네바조약이라든가 헤이그조약이라든가, 그래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쟁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이 발전된 것이 국제인도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루는 것이 달랐고, 종전에 전쟁상태에서 일어나는 국제인도법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나키 상태에서 티라니아 상태보다는 인권위반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점점 부각되기 시작된 것이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그 Human rights하고 IHL 2개를 오버랩하는 분야가 점점 이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가 요즘 부각돼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재판소나 우리 ICTY에서는 이 반인도범죄가 무력충돌 과정에서 생길 것을 요구하지만 좀 더 발전돼서 ICC 로마 stipulate와 같이 요즘은 반인도범죄가 전쟁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인도범죄 요건에서 우리 COI리포트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면 꼭 전쟁과정이 아니라 티라니아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북한에서의 심각한 상황에 국제사회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을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시간에 쫓기는 감이 나서 좀 민망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엘리자베스 박사님 잠깐 한 말씀 하시지요.
- Adriana Elisabeth(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미디어캠페인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북한에 대한 미디어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서 어떤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게 쉬운 논제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정부에도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현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인권보호를 위해서 양방향 또는 쌍방향·다방향으로 이 이슈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고 또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북한정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이제 플랫폼에서의 토론을 끝내고,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질문지가 들어왔는데 이번 세션을 한 1시간 더 늘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차마 염치가 없는 일이고 3시까지 어떻게 끝나도록 하는데 이런 순서대로 제가 질문에 대한 혹은 논평에 대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지가 있는데 세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Adriana Elisabeth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답은 홍성필 교수님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권오곤 판사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커피타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주최측에 5분 허락을 더 받았는데 또 연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플로어:** 감사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한국 인권 문제와 연관 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권오곤 판사님,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권오곤(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Sltumorang씨께서 연설하신 부분에 그 질문하신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대화할 창구를 열고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은 Sltumorang 박사님뿐만 아니라 홍성필 교수님, 백범석 교수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홍성필(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의 상황을 아시고 싶으면 많은 참고문헌들이 있습니다. 인권에 관해서 한국 또한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정권이 그들의 권력을 포기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적어도 국민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수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한 범죄에 대해서 손자나 손녀를 처벌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잡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엔에서 고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인도네시아말로 쓰여 있어서 제가 Adriana Elisabeth씨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 Adriana Elisabeth(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인도네시아 측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이 행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목표로 개최된 심포지엄입니다. 저는 이제 실무자가 아니고요. 저는 연구위원으로 Interactive 계층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곤(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Stumorang 박사님한테 한 것인데 읽고 계시는 동안 제가 대답을 한다면, 왜 당장... (생략). 금방 피고인의 신병을 잡아올 수도 없고 증거조차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준비를 되셨으리라고 믿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Mangadar Stumorang(Parahyangan 대학교 정치사회대학원장):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은 북한지도자를 재판소에 부르고 고위권력자들을 International forum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것을 통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원인입니다. 북한이 국제포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구안해야 되고, 안전과 보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국제적인 포럼……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미니매거진에 나오미 씨가 한 질문입니다. 주체인의 이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패널리스트들에게 전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체사상 때문에 북한이 인권유린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체사상에 관한 질문이어서 혹시 대답하실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홍성필 교수님, 주체사상하고 인권위반하고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아마 페미니매거진, 아마 여성잡지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성잡지의 기자분이 질문하신 겁니다.
- 홍성필(연세대학교 교수): 북한의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황장엽 씨가 그가 자기가 주체사상의 지도자라고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는 그의 개인적인 사상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 정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특정 나라의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시스템에 대해서 가족을 포함한 어떤 누구에게도……
-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주최 측에게 또 더 이상 시간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런 좋은 세미나 조직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 가지 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완전히 비정부, 비정치적인 토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청중에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사회를 잘못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5. 2세션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지금은 2세션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동남아시아역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Riefqi Muna이고요. 여기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더레이터로 역할을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 대화를 나눈 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이슈를 토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안전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적인 안보를 위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 미래의 지역적인 안보를 위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과 북한과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ni Widayani Soetjipto는 집에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Haris Azhar인테요. KontraS 코디네이터에서 오셨습니다. 민간 조직인테요. 이분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홍수피해를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Rafendi Djamin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지정하는 것은 오늘 5시에 쿠알라룸푸르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첫 번째 발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교통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발제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Rafendi Djamin씨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afendi Djamin(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 모더레이터님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행사개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저도 준비위원회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많이 관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의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Marzuki씨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AICHR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역할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저는 AICHR을 대표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세안인권위원회 부회장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본 행사에 북한대사관측을 초대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관련 인권이기 때문에 북한대사관측을 당연히 모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본 행사는 두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행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기관들이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그런 바운더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인데 특히 인권침해에 대해서 저희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모든 방법 그리고 모든 수단으로라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 관련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네시아는 모든 나라들의 동반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의 나라이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대국가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렇다면 민주화에 대한 의논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대국으로서 타국과의 우호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과의 인권과 관련된 가치를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한 관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Missing Link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북한 국민들의 갭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AICHR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에는 10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세안의 권한을 말씀드리면 권한들이 아직 제한적입니다. 이 기능을 보았을 때 'ASEAN Human Rights mechanism'은 이렇게 구

현을 하였습니다. 여성아동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인권위원회도 설립하였습니다. (생략). 아세안이 최적화된 그런 인권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0개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세안은 선언문 단계에 왔습니다. 즉, 인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탠다드 세팅을 통일화 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아까 한국측에서는 보다 더욱 포괄적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시아국가 협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지금 아시아에서 있는 것은 위원회간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 포럼 안에 인도네시아가 가입되어 있고 한국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DPS가 이런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지요. 글로벌 차원에서 분야별 특수대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태평양포럼의 역할을 그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역할들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ASEAN 플러스 3’ 중국, 한국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이지요. ASEAN 플러스 3에서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면 규범과 관련된 그리고 이슈화가 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보다 더 좋은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게 되겠지요. ASEAN National Forum은 지역·정치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접근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지요. 다국가를 투입시키는 그런 포럼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ASEAN National Forum에는 호주도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 접근, 그리고 아세안 선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세안으로 돌아가면, 아세안 가입국가가 10개국 이 있겠습니다. 아세안은 AICHR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외교부장관님들로 하여금 이 인권관련 문제들을 외교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권 관련 보호, 인권 관련 촉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진의 비중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엔에서 의견을 함께 제시했을 때 더 강력한 제안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총회에서 아세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그런 개별적인 나라에 대해서 커버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커버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인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합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시를 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세안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사실 하나된 목소리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세안 가입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글로벌세계에 따로 따로 진출하지는 것이지요. 이 아세안 안에서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AICHR은 아세안 차원에서 나라의 상황에 대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세안 가입국가들 간에 국가별 상황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ICHR은 5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5년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즉, AICHR을 통해서 이 인권관련 문제가 금기가 아닌 얼마든지 의논이 가능한 문제인 것으로 거듭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이든 간에 인권존중에 대해서 중요시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 인권의 중요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외교부장관의 회의를 통해서 현재 존재하는 TOR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들이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방안, 그리고 다른 인권문제들이 언급이 되었는데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의 문제 해결방안을 주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인권이 계속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전의 포지션과 지금 포지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관련 문제들이 다시 한번 피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세안도 그 안에 기

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뜻은 아세안과 한국 간에 협력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세안과 한국 간에 인권관련 협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이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세안과 한국 간에 그런 인권관련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아세안과 한국간의 협력관계는 투자 또는 사업관련 그런 협력관계가 주된 것인데요. 이런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Rafendi Djamin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시간 관리도 굉장히 적절하게 조절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김광진 발제자께서 해외탈북자 및 난민문제 등에 대한 지역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청중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1세션에서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질문사항을 준비된 메모지에 적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도 이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음을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김광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를 하기에 앞서 이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세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권세미나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과거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정치지도자들 사이 친분관계로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김일성화가 탄생한 것이 여기죠. 1995년 반등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1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북한이 주체노선을 선포한 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사실 북한인권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임명이 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는 태국의 아주 저명한 학자이지요. 그분이 임명되었을 때도 사실 태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괜찮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Marzuki Darusman 특별보고관님께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북한관련 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세상이 너무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 정말 큰 심리적인 충격일 것이다. 북한당국은 물론이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조그만 불편함과 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을 떠난 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 인권유린 문제, 그리고 우리 아시아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잘 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탈북자 현황인데요. 사실 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이제 북·중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넘었고,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몇 명 정도 넘어가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 한국으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살면서 듣건대 너무나도 많아서 대충 그냥 가서 쌀 좀 필요해서 가고, 먹고 살려고 가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조사를 해서 엉덩이를 치면서 “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럴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일하던 우리 회사에서 칠보산호텔을 운영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다 선발해서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품성이 아주 단정한 그런 여성들을 선발해서 내보냈는데 현지 총각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달아난 것이지요. 달아나서 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행복이 됐었는데 어떻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끝내 들어왔는데 소환이 됐지요. 또 연대책임으로 옆에서 일하던 책임자도 한 명 같이 소환이 됐는데 그 여성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좀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월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북한도 분명하게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북송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렵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미 ‘적들을 많이 만들지 말

라.’ 그것이 이제 북한 당국, 노동당의 정책이었고, 왜냐하면, 3대 연좌제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처리하면 적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서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지, 목사를 만났는지, 교회에 갔었는지, 한국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중국 쪽에서 사실 조사를 했지요. 2004년에 3만 명 정도 추정을 했고, 중국 군사과학원에서 2004년에 4만 명, 구호부 쪽에서는 7만5천명 내지 12만 명, 한국에 좋은 것들이라면 NGO가 있습니다. 한 10만 명 추산했고요. 국제위기감시기구가 10만 명,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3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2,000~3,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1,000명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을 떠들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여성들과 중국남성들 사이에 낳은 아동들입니다. 미국의회 쪽에서 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미국에 입양하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명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도 인권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탈북자들도 중국에서 신분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권이라고 할지 아니면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못 받으면 학교도 못가고 국적도 없고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아동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견돼서 건설 노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한 100여명 정도가 러시아 당국에서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었지요. 2014년 2월 4일 날이 러시아이민국난민 담당과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100명 정도 자기네 임시망명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전 세계에 탈북자들이 정착하고 있고 태국, 대만,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망명 신청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실태, 오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분이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붙잡히면 복송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매매 강요, 별의별 인권침해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KBS 한민족방송 라디오를 매주 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탈북자 한 분씩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나온 북한여성들, 탈북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조건하에서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그리고 자기 인권을 주장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안이 끌고 가서 북한에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지면 별의별 고초, 자기 가족들 연좌제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인권유린 행위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것을 매주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에 불법 월경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온 것이다. 국제난민법상 난민은 돌려보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불법적으로 월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체제는 불법 월경자들을 상호 인도해야 된다는 법도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 복송되는 경우에 북한 내에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송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문, 구타, 강제낙태, 성유린, 구금, 강제노동, 연좌제 처벌, 강제이주, 사형 등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유엔헌장, 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거주지 및 시민권 선택의 자유, 그리고 북한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국경지역에서 보위부가 조사하는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본인 신원파악이지요. 그 다음에 도강시기 및 횡수, 도강 이후의 행적,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인 만났느냐, 기독교인을 만났느냐, 한국행을 시도했느냐, 인신매매 됐냐, 인신매매도 포함이 됩니다. 중국인 애를 가졌느냐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을 신청했냐, 외국 TV를 봤냐 이겁니다. 특히 한국 TV요.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중을 가려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많이 되고 있고요. 노동착취, 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복송 위협으로 중국 공안에 신고위협을 하고 있고요. 가정이 파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적 어린이들만 탄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명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오면서 어느 한 여성분이 악어에 물려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터뷰 과정에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니까 생리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여성이 정말 예쁘게 생긴 처녀였는데 그것을 인도하는 안내원이 원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다가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들이 서로 정보 얘기하면서 여성이 생리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희생을 당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하면서 이제 탈출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협력 방안입니다. 당연히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쓰나미 나면 그 주변국들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변 우리 형제들, 친구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 도와줘야겠지요.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각국 그리고 NGO,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해서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 난민이나, 난민의 조건에 종교적인·사회적인·정치적인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미 북한에서는 그런 정치적인·사회적인·종교적인 박해를 주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정치선거에 99.98%가 참가하고 찬성을 하지요. 노동당이 select한 단일후보로 다 나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유명한 혁명가극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은 기독교, 불교, 미신 다 비난합니다. 기독교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것이 "뺨을 한 대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때려라" 인데요, 이는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구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데 북한 '성황당'에서는 "바보짓이다. 멍청한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북한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이미 정치적인·사회적인·종교적인 그런 박해와 그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탈북 했다가 돌아가면 더 큰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결핍·궁핍, 경제적 이유 때문에 넘어왔다. 경

제적인 그 이유가 왜 생겼나, 그것은 북한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정치적인·경제적인 견책·정책 그리고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시 난민지위를 보장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현지 체제 중 난민의 지위에 부합된다.' 유엔난민고등사무소에 의해서 정리됐지요. 탈북 당시 난민이 아니었을지라도 북송 후 타당한 박해위험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민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차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2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불법이주자라고 할지라도 행정권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금지, 사생활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말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탈북자들을 지지를 해 주고 있지요.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들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더욱 진지하게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제도적 협조겠지요.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에 대한 구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베트남 난민 또는 다른 나라의 난민을 중국사회에 통합시키거나 다른 곳에 정착하도록 유엔난민고등기구와 협조해 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 주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 연구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발표를 들었는데요. Rafendi Djamin씨가 이 행사장을 떠나면 발표자가 줄어들겠지요. 우리 세션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근 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윤남근(인권위 북한특위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윤남근입니다. 오늘 북한대사관 관계자분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독일 베를린에서 심포지엄을 할 때는 북한대사관 건물 바로 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그때 안 왔었고, 그리고 오늘 사실 북한대사관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얘기하면서 북한당국 외교관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초청을 안 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초청을 해도 북한대사관에서 온 적이 없었습니다.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5분 동안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

(속 개)

○ **윤남근(인권위 북한특위위원장)**: 북한은 2014년 9월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인권의 개념을 자유세계와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은 곧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인권과 국가의 주권을 동일시함으로써 시민은 국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채택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들은 부르조아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고착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제 아래서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신동혁 씨의 자서전 중 거짓인 부분을 문제삼아 COI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주장은 그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

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외교관들이 와서 회의 초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제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만든 상당히 긴 문건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paragraph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생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인권침해가 전부 거짓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완전히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 누구에 대해서도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유엔 COI에서 북한인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입국을 안 시킬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인지 진짜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결론으로 돌아와서 아세안의 역할과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세안이 북한인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첫째는 북한하고 아세안하고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거의 90%이상 동남아를 통해서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탈북 경로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내지 90%이상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중국 대륙을 통과합니다.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당연히 송환이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라오스도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서 탈북자가 체포되는 경우에 북한으로 송환한 예가 있습니다. 2013년 5월달에 청소년 탈북자 9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라오스는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탈북자를 색출하지는 않습니다. 라오스경찰은 2014년 10월달에 그곳에서 체포된 탈북자 6명에 대해서 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주민의 인권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탈북자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해서입니다. 북한은 아세안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아세안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세안은 북한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한당국과 대화할 때마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U 국가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도 EU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얀마의 예입니다. 미얀마는 최근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상당히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의 선례는 북한정권의 교체 없이도 인권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바로 아세안 국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탈북자 인권에 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해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불법 월경자로 취급해서 이들을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유엔 HCR도 본국을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것이 인정되면 현장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보호해 준다면 탈북자들이 탈출과정에서 겪는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태국과 라오스를 방문해서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경로를 직접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도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그 정글 속에서 숨어서 탈출해 나오는 것이 거의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AICHR,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등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을 상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모든 국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중국도 탈북자들을 강제송환 하는 데 대해서 주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특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훈 대사님께 말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인권대사): 사회자님 고맙습니다. 저는 영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님께 저를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많은 인구와 문화와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인권엔 많은 공헌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잘못 맞춰서 온 것 같긴 하지만 이 기회를 가져서 북한인권엔 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과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 들었을 때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는 통치자가 3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도록 허락한 나라입니다. 300만 명은 정치수용소에 넣었고, 20만여명을 정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마을에 상응하는 인구입니다. 그들이 캠프에서 살고 있고 캠프에서 죽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가 많이 억압되어 있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2,000명,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70~80% 탈북자들은 여자입니다. 전 세션에서 여성인권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80~90%의 여자들이 성적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결혼 등과 같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생각해 보시면 탈북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것이고 잡히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들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더럽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2014년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한국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하실 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민주주의 상황과 인권의 상황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인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저에게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한국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터뷰’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협박으로 인해서 실제로 합법적으로 방송하지는 않았지만 한 여인이 탈출을 하면서 겪는 아픔을 얘기하는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영화입니다. Rafendi Djamin씨께서 코멘트 했지만 간단하게 한국어로 저의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Rafendi Djamin 인도네시아에 AICHR대표께서 AICHR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ICHR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런 훌륭한 기구가 있고 이게 상당히 앞으로 아세안이 국제무대에서 활약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개의 mandate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4개의 mandate는 기본적으로 인권증진, 그리고 인권보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AICHR가 그렇게 오래 된 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5~6년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인권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유럽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위원회라고 있었지요. 거의 45년, 50년 가까이 유럽에서 특히 난민에 대해서 난민신청과 난민보호 또 난민지원에 대한 법제도화, 또 국가마다 난민정책, 인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또 난민들이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근거 마련, 또 난민들이 강제송환 되지 않도록 협약을 맺는 것 등이 이 유럽인권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AICHR에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물론 유럽인권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하고 기능이 많이 겹치게 되었지만 아직도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EU special representative human rights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타브로스 람브리 니디스라는 분이 special representative로 있고, 유럽의회도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생략).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이 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북한인권이 아세안에게도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은 문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세안은 유럽연합에 맞먹는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을 한다는 것은 유럽연합이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의 성공비결은 무엇인가, 왜 유럽연합이 잘 통합을 했는가, 저는 유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통계수치 또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통합된 안보정책도 있고 또 통화가 있고 유로가 있지요. 또 이민법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유럽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가치입니다.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 유럽을 통합을 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세안도 제대로 된 유럽 같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증진도 될 수 있겠고, 공통된 안보정책을 펼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인권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적인 소프트파워가 진정한 아세안지역통합이 유럽과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인권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 북한인권을 다룬

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든 아세안에서 북한인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엔에서 이미 그것을 다 했습니다. 아까 첫 세션에서도 COI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유엔이 확고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3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탄압은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Crime against humanity'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는 제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이 그렇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는 유엔에서 그랬듯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실질적으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세안은 소프트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을 포함해서 인권을 논의할 때 유럽, EU가 언급이 됩니다. EU는 국제사회의 중심이고, 아세안이 그렇게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세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북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런 재도약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은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제정세 또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사실상 지금 북한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이유를 북한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3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외부간섭을 핵무기로 막고 내부결속을 인권탄압으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대국을 향한 김씨 왕조의 철권통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체제유지가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도 이미 엄청납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총소득 격차는 이미 40배가 넘습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관련된 제재에 이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아마도 북한을 변화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로

물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또 아세안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통일은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왔을 때 아마도 북한주민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당신네들은 뭘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인도네시아든 저희 대한민국이든 우리 모두가 떳떳하게 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석자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조교수님이신 Ani Widayani Soetjipto님, 코디네이터이신 Haris Azhar께서도 역시 인도네시아 홍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이셨던 Rafendi Djamin 위원장님께서도 다음 일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참석을 못하시고 가셨는데요. 오늘 발제해 주신 나머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올라왔는데요. 윤남근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Rafendi씨에게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Rafendi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정훈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윤남근(인권위 북한특위위원장): “오늘 논의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이 더 발전된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실들은 결국은 국제사회, 많은 인권단체들 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전 세계 자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인권대사): 이 문제는 3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어떤 방향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인권 논의가 진행되겠는가, COI보고서 권고된 내용의 이행 말고 추가적 논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지 몇 가지 사항을 업데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기능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압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은 있지 않은 나중에 있을 것을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네, 고맙습니다. 김광진님께서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북한의 난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설명하였다시피 영어에는 ‘목에 가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는 그야말로 ‘목에 가시’입니다. 과거에는 연좌제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였는데 지금 너무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탈북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외화, 통치자금의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아직도 자원의 대부분을 핵,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며 외부세계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외부세계의 정보, 진실을 더 많이 북한에 알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M. Riefqi Muna(인도네시아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맺었을 때 어떠한 주제가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석을 해 보면, 아마 아세안이 어떠한 측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귀빈 여러분, 시간관계상 이 행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이미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광진 선생님,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회 위원장님으로부터도 발표를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훈 인권대사님으로부터도 코멘트와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차원에서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간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인권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아세안과 한국간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포럼 같은 행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됐는데요. 이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 그리고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발표자분들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폐회사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유영하 상임위원님께서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하(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수업시간에 조금 일찍 끝내주는 교수가 굉장히 훌륭한 교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어진 강의시간을 넘겨서 강의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시 5분까지입니다. 다행히 패널들께서 활발하

게 토론해 주셔서 제가 남은 시간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저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신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수준 높은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양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자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과학원 실무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의의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기 전에 왜 지금껏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도네시아와 저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기준이 두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정훈 대사께서 하셨는데, 훗날 북한주민이 이런 복합적인 정권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와달라고,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외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우리 이정훈 대사님께서 먼저 하셔서 제가 이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치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이고, 정의로운 행동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제가 했던 답이 이겁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불의에 대해 맞서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저는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저나 여러분이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도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 사회(정책교육국장 심상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과학원,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가 공동주최한 2015년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안한 귀갓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패널 프로필


Name	HYUN, Byung-Chul(현병철)	
Year of Birth	1944	
Title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Education	- Wonkwang University, LL.B. - Graduate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LL.M - Graduate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Ph.D	
Work Experience	- Dean, Hanyang Cyber University - Dean, College of Law, Hanyang University - Dea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 President, The Korea Association of Comparative Private Law - Vice President & Secretary-General, The Korea Law Professors Association	

Name	Yoo, Yeong-ha(유영하)	
Year of Birth	1962	
Title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HRCK	
Education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2004 Prosecutor - 2005~2006 Human Rights Ombudsman, Ministry of Justice - 2006~2007 Human Rights Commissioner, Seoul Bar Association - 2009~2013 Laywer, Woojin LLC - 2012~2014 Board member, Hansei University - 2013~2014 Laywer, Saebit LLC - Mar. 2014~Present Standing Commissioner, NHRCK 	


Name	Hafid Abbas	
Date of Birth	27 August 1957	
Titl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Indonesia (Komnas HAM)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e University of Jakarta, Ph.D (1990) - Syracuse University, New York USA, Post Doctorate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or General/Head of the Agency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uman Rights,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Sept. 2006-Oct. 2010) - UNESCO International Consultant in Asia and Pacific Region - World Bank Team Leader for Education Reform in Indonesia - Deputy/Vice Minister for Ministry of Human Rights Affairs (1999-2001) 	


Name	Marzuki Darusman (마르주끼 다루스만)	
Year of Birth	1945	
Titl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Education	- 1974 graduated from law school at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in Bandung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Present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2010~Present Standing advisor of the Freeport Indonesia - 2009~10 Member of UN Commission of Inquiry to investigate the assassination of former Pakistani Prime Minister Benazir Bhutto - 2007~Present Member of the International Independent Group of Eminent Persons for Sri Lanka - 2004~09 Member of the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representing Golkar. - 1999~01 Attorney General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1998~03 Chair of the Indonesi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1978~99 Member of the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representing Golkar. 	

Name	RA, Jong-yil(라종일)	
Year of Birth	1940	
Title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 Ph. D. in International Relations, Trinity College, Cambridge University, UK - 1965 M.A. in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63 B.A. in Polit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g. 2014-Aug. 2015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 Feb. 2013-Jan. 2015 Chairman, Forum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HRCK - Feb. 201-Jan. 2015 Member of Special 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HRCK - Sep. 2011-Present University Distinguished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 Mar. 2007-Mar. 2011 President of the Woosuk University - Mar. 2004-Mar. 2007 Ambassador to Japan - Mar. 2003-Feb. 2004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 Apr. 2001-Feb. 2003 Ambassador to the United Kingdom - Sep. 2000 - Mar. 2001 Special Advisor to the Director-General of NIS for Diplomacy and Unification Affairs - Mar. 2007 Medal of Honour, Japan - Jan. 14, 2011 The Honorary Medal of Sahak Metrey with the rank of Moha Sena from the Kingdom of Cambodia 	


Name	Kwon, O-Gon(권오곤)	
Year of Birth	1953	
Title	Permanent Judg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 LL.B.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1983 LL.M.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85 LL.M. Harvard Law School, U.S.A.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2011 Vice-President of the ICTY - 2001~Present Permanent Judge of the ICTY - 2007~Present member of the Board of Editors of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1979~2001 Served in th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judge in various courts - 1997~1999 Director of Research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1990-1992 Planning Director at the Office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1981~1984 Assistant Leg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Dr. Adriana Elisabeth	
Year of Birth	1963	
Title	Head of Centre for Political Studies,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D, Department of History and Politics, University of Wollongong, New South Wales, Australia (2008). - Master of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asmania, Hobart, Australia (1995). - Bachelor (Dra.),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Jayabaya, Jakarta, Indonesia (1987).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rdinator/Team Leader, Pre-dialogue Meetings in Papua and Jakarta (2009 - 2015). - Host of Seminar “Jalan Panjang Penegakan dan Penghormatan Hak Asasi Manusia di Korea Utara” on North Korean Human Right Week, with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2014) - Head of Divisi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Centre for Political Studies, th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2010-2013). - Coordinator, policy recommendation to the Vice President Office on “Grand Design of Indonesia’s Foreign Policy” (2013). - Coordinator, LIPI-CIER, Joint Study on “Feasibility Study of Economic Cooperation Arrangement (ECA) between Indonesia and Taiwan” (2012). 	


Name	Hong, Seong-Phil(홍성필)	
Year of Birth	1962	
Title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 (law), M.A. (international law), Ph. D. Seoul National University - LL. M, JSD. Yale Law School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mber,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Expert member, Asian Council of Jurist (Asia-Pacific Forum) - Conciliator,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World Bank) - Chairman, the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ember,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NHRCK) 	

Name	BAEK, Buhm-Suk(백범석)	
Year of Birth	1974	
Title	Professor, International College of Kyunghee Univ.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S.D. Cornell Law School - LL.M. Cornell Law School -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Yonsei University - B.A. in Law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p. 2014 ~ Present lecturer(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Sep. 2012 ~ Aug. 2013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Mar. 2013 ~ Aug. 2013 lecturer(International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Sep. 2011 ~ Jun. 2012 Research Fellow,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Name	Mangadar Situmorang	
Year of Birth	1964	
Title	Dean of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Parahyangan Universit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helor (S1) in International Relations, Gadjah Mada University (1983-1988) - Master (S2) in Political Science, Gadjah Mada University (1992-1994) - PhD (S3) in Social Science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Perth, Western Australia (2004-2007). - Internship, Research Fellowship,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 Centre, INCORE, University of Ulster, Londonderry, Northern Ireland (2004) - Postdoctoral, Asia Research Centre, Murdoch University, Western Australia, 2010.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 ~ present Lectur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Unpar), Bandung - 1995-1997 Vice Dean for Student Affairs - Director of Parahyanga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PACIS) Unpar, 1997-1999 and 2009 - 2011 - 2001-2002 Vice Dean for Academic Affairs - July 2011 - present Dean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Name	Adriana Venny Aryani	
Year of Birth	1970	
Title	Plenary Commission Member of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tor in Cultural Studies (Major: Philosophy), University of Indonesia (2011) - Maste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Indonesia (1999) - Bachelor of Political Science, Major: International Relations, Catholic University of Parahyangan (1995)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issioner for The Indonesia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Period 2015-2019) as Coordinator for working groups: Papua and International advocacy. 	

Name	Muhammad Riefqi Muna	
Year of Birth	27 November 1963	
Title	Researcher at the Center of Political Studies, LIPI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helor Degree from Muhamadiyah University, Yogyakarta. - Master Degree in Defence Studies,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Ph.D from Faculty of Defence and Security, Royal Military College of Science, Cranfield University.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rt Consultant for Human Security Index of Indonesia (HSSI), run by UNDP Jakarta and Indonesian National Planning Agency (Bappenas) - Eminent Person for the Trilateral Dialogue on Indian Ocean (TDIO) - Associate Editor of the Annual Review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 Special Correspondent for Jane's Defence Weekly (London) 	


Name	KIM, Kwang Jin(김광진)	
Year of Birth	1967	
Title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tor course completion in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Kookmin University - MBA in Business School, Kookmin University - M.A. i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est Researcher,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Columnist, Radio Free Asia(RFA) - Standing Commissioner,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Consultant, Ministry of Unification - Consultant, KBS, MBC - Broadcasting host, KBS Hanminjok 	

Name	Rafendi Djamin	
Year of Birth	1957	
Title	Indonesian Representative for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helor Degree in Sociology,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ersity of Indonesia - Master Degree in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of Social Studies, The Hague, Netherlands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ight Working Group - Convener of SAPA Task-Force on ASEAN and Human Rights (2013) - Independent Evaluator of Indonesian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July 2006) - Amsterdam Municipality, as Senior Social Security Consultant (April 2001-August 2003) - Chairperson of Indonesia's Forum for Human Dignity (INFOHD), Amsterdam, Netherlands (1992-2003) 	

Name	YOON, Nam-Geun(윤남근)	
Year of Birth	1956	
Title	Professor of Law, Korea University Law School (Civil Procedure Law, Bankruptcy Law)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ly 1995~May 1996 Visiting Scholar, Yale Law School - Mar. 1985~Feb. 1987 Judicial Training and Education Institute (admitted to Bar) - Feb. 1984 LLB, Law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n. 2011~Present Commissioner, NHRCK - July 2011~July 2013 Commissioner, Legal Ethics &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 June 2008~Present Arbitrat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Aug. 2011~Present Chairperson, The Subcontract Dispute Resolution Council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Apr. 2008~Present Vice Chairperson, Korea Bankruptcy Law Association - Mar. 2002~Aug. 2007 Presiding Judge(District Court) - Mar. 1987~Feb. 2002 Judge(District Court) 	

Name	Lee, Jung-Hoon(이정훈)	
Year of Birth	1961	
Title	Professor & Director of Yonsei Center for Human Liberty, Yonsei Universit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Oxford, D.Phil. - Fletcher School of Law & Diplomacy, MALD - Tufts University, BA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bassador for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 - Chair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Humanitarian Affairs, Ministry of Unification - Senior Member,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Co-Chair, Save North Korea - Vice Chair, Supporter's Group for the 'House of Sharing' - Director, Center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Name	Ani W. Soetjipto	
Year of Birth	-	
Title	Senior Lecture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ersity of Indonesia	
Education	-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in 1989 from the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nior Lecture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ersity of Indonesia, since 1989. - Board member of the Centre for Electoral Reform (CENTRO) since 1999. - Board of Advisor GPSP (Gerakan Pemberdayaan Swara Perempuan) since 2004 - Board Member of GPPI (Gerakan Perempuan Peduli Indonesia) since 2003 - Board Member of University Network for Free and Fair Election (UNFREL) in 1998-1999 - Program Officer Gender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t the Asia Foundation Jakarta (2005-2007) - Project Coordinator of Convention Watch Working Group under the Auspices of Women's Studies Program University of Indonesia (1995-2001) - Senior researcher of the Center of Political Studies (Pusat Kajian Politik or Puskapol) - Gender consultant for HIVOS and the Asia Foundation. 	

Name	Haris Azhar	
Year of Birth	1976	
Title	Coordinator, Komisi untuk Orang Hilang dan Korban Tindak Kekerasan (KontraS)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Art (MA), University of Essex, UK, 2010. - Maste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Indonesia, 2003. - Bachelor of Laws, Trisakti University 1999. 	
Work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 advocate and expert on Indonesian Law and Human Rights holding a law degree and MA in Human Rights from Essex Univ., and has been working with KontraS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 of Violence) and Human Rights NGOs Community in Indonesia for more than a decade. - fellowship on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Africa on 2006 - participate in a program called "Standing with Civil Society" which initiated by President Obama. Along with KontraS - Coordinator of KontraS, Indonesia 	

2. 행사 사진



〈개회사 : 현병철 위원장〉



〈기조연설 : 마르주키 다루스만〉



〈1세션〉



〈2세션〉



〈주요인사 단체사진〉



〈행사장 전경〉



〈폐회사 : 유명하 상임위원〉



〈기자간담회〉

3. 국내 주요 언론보도

연합뉴스

2015.02.09

인권위, 자카르타서 '북한인권 개선' 국제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솔탄호텔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인도네시아 과학원과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 등 주요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아드리아나 엘리자베스 인도네시아 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다.

인권위는 2004년부터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동시 수교국가로서 인권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아세안 국가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2015/02/09 09:27 송고

인권위, 인도네시아서 '북한인권 개선' 국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News1 민경석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과학원·국가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 등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2010년부터는 미국 워싱턴,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권은 세계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돼 온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주체인 북한 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협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간 다자간 협력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초연설과 함께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과 아드리아나 엘리자베스 인도네시아 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이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북한 전문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라펜디 자민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이 각각 '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 협력 방안', '동남아 지역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심포지엄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동시 수교국가로서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남·북한간 인권대화의 조정자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소극적 태도였던 아세안 국가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사항을 전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논의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j86@

인권위, 인도네시아 주요기관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시스】 오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과학원·국가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과 아드리아나 엘리자베스 인도네시아 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을 주제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북한 전문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라펜디 자민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이 '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 협력 방안'과 '동남아 지역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주체인 북한 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대화과 교류협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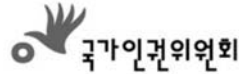
현 위원장은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간 다자간 협력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심포지엄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동시 수교국가로서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남·북한간 인권대화의 조정자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에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사항을 전달하고, 아세안 국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논의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인권위, 내일 인니서 '北 인권개선' 심포지엄 개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과학원,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인식을 확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고자 2010년부터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기초연설을 할 예정이며,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과 아드리아나 엘리자베스(Adriana Elisabeth) 인도네시아 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이 발표할 계획이다.

두번째 세션에선 보다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을 주제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북한 전문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라펜디 자민(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이 '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 협력 방안'과 '동남아 지역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권은 세계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주체인 북한 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대화 및 교류협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간 다자간 협력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심포지엄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동시 수교국가로서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남북한간 인권대화의 조정자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KBS 뉴스광장, 2015. 2. 11.

‘북 인권 개선’ 토론회...범아시아 인권기구 제안

〈앵커 멘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토론회가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의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차원의 국제 인권기구에 설립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자카르타에서 고영태 특과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자카르타 토론회에서는 국제 사회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범아시아적 인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을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차원의 인권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남아시아의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으면 인신 매매와 복송 등의 위험없이 국제법에 따라 한국 송환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등 국제 기구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얻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다루스만 유엔특별인권보고관은 다음달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인권침해자들이 국제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마르주키 다루스만(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유엔은 많은 법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결론을 내리기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 이번 국제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다음달 서울에 설치하는 등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공조방안도 논의 됐습니다.

자카르타에서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현병철 '아시아 인권협의체' 설립 제안..."북한 인권개선 노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양자 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의 탈북자 인권 문제뿐 아니라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인신매매 등의 문제는 국가 간 또는 지역 단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므로 동남아뿐 아니라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나 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또 "북한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의 개선 주체가 될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과학원,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AICHR 인도네시아대표부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도네시아에 북한인권 심포지엄 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대해 북한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인도네시아 주간지를 인용해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인도네시아 외무부에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법적으로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 인도네시아에 북한인권 심포지엄 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연 데 대해 북한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인터넷판은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현지 북한 대사관이 북한 인권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측에 민주국가로서 법적 승인을 받은 행사는 막을 수는 없으며 인도네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템포'는 리정렬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항의 서한과는 별도로 북한 반대 집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0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

2015년 02월 16일 월요일 008면 종합

남-북 인도네시아서 '북 인권 충돌'

인권위 자카르타서 '북 인권' 심포지엄
북 대사관쪽 행사장 찾아 항의문 낭독

북한 인권을 둔 남북 갈등이 인도네시아에서 외교적 충돌로 불거졌다. 북한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 관계자가 북한 인권 관련 행사장을 찾아 직접 항의문 낭독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 과학원 등과 함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에 앞서 현지 북한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통해 반감을 확산시킬 의도로 기획됐다"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고 현지 주간지 <템포>가 최근 보도했다. <템포>는 리정렬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항의 서한과 별도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를 만나 "북한을 반

대하는 집회의 개최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북한 대사관에 보낸 답변서에서 "우리는 민주국가로서 이미 법적 승인을 받은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템포>는 전했다.

결국 북한 대사관 쪽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취재진 앞에서 항의문을 낭독하는 이례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잇단 문제제기가 감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짚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취재일기

안쓰러운 북한의 인권 저지 외교



일러스트=김희룡 기자

지난 17일(현지시간) 폭설로 도시 전체가 마비됐던 미국 워싱턴. 버스가 끊기고 공공 기관이 문을 닫았지만 워싱턴의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에선 북한 인권 토론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전날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중단을 요구했던 토론회다. 17일 현장에서 만난 한 인사는 “북한 유엔대표부 측은 지난 13일 이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요구해 왔다”며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인사가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국무부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참가를 주장한 건 토론회는 취소는 주장하려는 명분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CSIS의 빅터 차 한 국석좌도 “북한이 원했던 게 토론회 참석인지 취소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CSIS와 연세대, 북한인권위원회(HRNK),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기념재단 등이 함께 마련한 이 토론회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북한 외교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인권 토론회’를 막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인권 공론화 저지 외교에 총동원령이 내려진 듯한 양상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도 막으려 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자카르타 인권 심포지엄이 열리던 현장에 북한 관리들이 직접 나타나 항의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

면 이정렬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론 집권 여당과 인터폴에까지 “북한을 모욕하는 이 같은 행사는 중단돼야 하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북한은 19일엔 ‘협박 외교’로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무모한 인권 도발 책동을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인권 행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놓고 대체적으로 해석이 일치한다. 17일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평양의 수뇌부에서 행사를 막으라고 재촉하니 일선 외교관들이 결사적으로 나서서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은 현장 외교관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카르타나 워싱턴의 인권 토론회가 취소됐다 한들 북한 인권 이슈가 국제 사회에서 사라질 리는 만무하다. 동시에 북한은 정치적 인권을 고사하고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생존권적 인권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을 굶기는 나라가 바깥 세계를 상대로 인권 전쟁을 벌여봐야 설득력이 없다. 북한은 인권 저지 외교에 앞서 먹고사는 인권부터 스스로 해결하는 게 먼저다.



채 병 건
워싱턴 특파원

4.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Original〉

<http://www.antaraneews.com/berita/479286/dubes-korut-protes-ke-indonesia-apa-sebabnya>

Dubes Korut protes ke Indonesia, apa sebabnya?

Selasa, 10 Februari 2015 18:33 WIB | 7.001 Views

Pewarta: Michael Teguh Adiputra Siahaan

Masalah HAM di DPRK tidak seharusnya dibahas dengan Indonesia tanpa melibatkan Korea Utara.

Jakarta (ANTARA News) - Duta Besar Korea Utara untuk Indonesia Ri Jong Ryul mengkritik acara “Simposium Hak Asasi Manusia (HAM) di Korea Utara” yang diadakan di Indonesia karena negaranya tidak pernah diinformasikan bahkan tidak diundang dalam kegiatan tersebut.

“Simposium yang membahas HAM di Korea Utara dilaksanakan tanpa pernah mendiskusikan apapun dengan negara kami. Tidak pernah ada informasi maupun undangan kepada kami terkait hal ini,” kata Ri Jong Ryul di Kedutaan Besar Republik Demokratik Rakyat Korea (DPRK), Jakarta, Selasa.

Jong Ryul mengatakan pihaknya telah mengajukan tuntutan resmi kepada pemerintah Indonesia, partai politik dan bahkan interpol di Jakarta untuk bisa mendapatkan semua informasi tentang kegiatan yang diinisiasi oleh pihak Korea Selatan dan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LIPI).

Dia juga menyesalkan simposium ini diadakan di Indonesia, negara yang memiliki hubungan sangat baik dengan Korea Utara.

“Simposium di Jakarta bisa menjadi pintu masuk bagi pihak-pihak yang menentang DPRK untuk menanamkan pandangannya tentang Korea Utara di Indonesia,” ujar dia.

Walaupun tidak diundang, Jong Ryul melanjutkan pihaknya tetap mengirimkan delegasi untuk memantau acara yang diadakan di Hotel Sultan tersebut.

“Kami tetap mengirimkan delegasi untuk memantau jalannya acara. DPRK sempat meminta agar diberikan waktu untuk menyampaikan pandangan namun tidak diizinkan,” ujar Jong Ryul.

Duta Besar DPRK pun meminta kepada semua pihak pelaksana simposium untuk segera menghentikan acara .

“Masalah HAM di DPRK tidak seharusnya dibahas dengan Indonesia tanpa melibatkan Korea Utara. Untuk itu kami meminta agar acara tersebut dihentikan,” kata dia.

Simposium internasional ini sendiri terlaksana atas kerja sam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Komnas HAM), LIPI, Perwakilan Indonesia untuk Komisi HAM Antarpemerintah ASEAN (AICHR Indonesia) serta Komisi HAM Korea Selatan (NHRCK).

Menurut situs resmi LIPI, Komnas HAM Korea telah menyelenggarakan simposium internasional terkait perkembangan HAM di Korea Utara sejak tahun 2004.

Sementara Sidang Umum Perserikatan Bangsa-Bangsa (PBB) ke-69 telah menghasilkan sebuah resolusi mengenai situasi HAM di Korea Utara sekaligus menjadikan masalah ini menjadi isu internasional.

Editor: Ella Syafputri
COPYRIGHT © ANTARA 2015

<번역본>

<http://www.antaranews.com/berita/479286/dubes-korut-protes-ke-indonesia-apa-sebabnya>

북한 대사관, 인도네시아에 항의하다. 무엇 때문인가?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18:33 (서부자바시간기준) | 7.001 Views

기자 : Michael Teguh Adiputra Siahaan

북한의 개입 없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인도네시아와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카르타 (ANTARA News) - 주 인니 북한대사 리종렬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심포지움” 행사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측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받은 바도 없고 초청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북한의 인권을 토론하는 심포지움이 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채 열렸다. 이에 대해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었고 초청도 받은 바도 없다,” 화요일 주 인니 북한대사 리종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리종렬은 북한측이 인도네시아 정부, 정당, 심지어 자카르타에 있는 인티폴에게 한국측과 인도네시아 학술원(LIPI)이 행한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

“자카르타에서의 심포지움은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있어 현지에서 북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심어주는데 출입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초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종렬은 이에 대한 조치로 행사가 열린 술탄 호텔에 행사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우리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당국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리종렬이 말했다.

북한 대사는 또한 이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모든 측에게 행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을 개입시키지 않은 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인도네시아와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행사의 중지를 요구했다.” 그가 말했다.

이 국제 심포지움은 인도네시아 국가 인권 위원회(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 Komnas HAM), 인도네시아 학술원(LIPI), 아세안 국가 인권 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AICHR Indonesia) 및 한국 인권 위원회 간의 공동 협력으로 주최된 행사이다.

인도네시아 학술원 (LIPI)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인권 위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왔다.

반면 제 69회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공론화했다.

Editor: Ella Syafputri
COPYRIGHT © ANTARA 2015

〈Original〉

http://www.ri.co.id/post/berita/139151/luar_negeri/lipi_gelar_simposium_bahas_ham_korut.html

LIPI Gelar Simposium Bahas HAM Korut

KBRN, Jakarta : Pelanggaran Hak Asasi Manusia (HAM) di Korea Utara, menjadi isu internasional yang tidak pernah berhenti dibahas. Sidang Umum Perserikatan Bangsa-Bangsa (PBB) ke-69 telah menghasilkan sebuah resolusi mengenai situasi HAM di negara tersebut.

Untuk itu,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LIPI) melalui Pusat Penelitian Politik bekerjasama deng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Komnas HAM), dan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AICHR) menggelar Simposium Internasional HAM Korea Utara di Jakarta, Selasa (10/2/2015).

Isu HAM semakin berkembang ditingkat global. Paska perang dingin berakhir, runtuhnya tembok Berlin pada tahun 1989, rezim hak asasi manusia semakin menguat. Berbagai rezim pemerintahan yang otoriter, korup, dan diktator dengan melakukan kejahatan terhadap kemanusiaan seperti penghilangan orang secara paksa, pembunuhan massal, kini dilawan, dijatuhkan, dan diganti.

“Deklarasi Wina pada tahun 1993 menjadi momen bersejarah dimana hak asasi diperdebatkan, namun diakui secara bersamaan,” ungkap Kepala LIPI Prof. Dr. Iskandar Zulkarnain, Selasa (10/2/2015).

Melalui momen tersebut, lanjut Iskandar, hak asasi semakin universal. Negara-negara dengan berbagai latar belakang rezim politik, dituntut untuk ikut

memajukan HAM tanpa mengenal batasan negara, kewarganegaraan, agama, suku, dan yang lainnya. Deklarasi Wina tidak serta merta menghentikan terjadinya pelanggaran HAM, seperti yang terjadi di Korea Utara.

Kepala Pusat Penelitian Politik LIPI, Dr. Adriana Elisabeth mengungkapkan resolusi PBB yang dihasilkan melalui sidang umum ke-69 membenarkan kesimpulan laporan Commission of Inquiry (COI) tentang terjadinya kejahatan kemanusiaan dalam kebijakan yang dijalankan oleh pemimpin Korea Utara.

“Hal ini mendorong Dewan Keamanan PBB untuk merujuk situasi HAM di Korea Utara pada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an memberikan sanksi yang tepat bagi pihak yang paling bertanggungjawab atas terjadinya kejahatan terhadap kemanusiaan di Korea Utara,” jelasnya.

Selain itu, dikatakan oleh pelapor khusus PBB untuk situasi HAM di Korea Utara, Marzuki Darusman, bahwa pelanggaran tersebut, terekam dari pengalaman hidup sekitar 27 ribu warga negara itu yang berhasil melarikan diri ke Korea Selatan.

“Pelanggaran HAM di Korea Utara yang sedang menjadi perhatian dunia internasional, disebut sebagai kombinasi kejahatan masa lalu yang terjadi di Jerman pada masa kekuasaan rezim fasis otoriter Nazi, rezim apartheid di Afrika Selatan, dan rezim totaliter komunis Uni Soviet,” imbuhnya.

Walaupun Korea Utara merupakan negara yang tertutup dengan berbagai negara, hal ini justru berbeda dengan hubungan Korea Utara-Indonesia. Korea Utara memiliki hubungan yang cukup baik dengan Indonesia sejak masa pemerintahan Presiden Soekarno. Oleh karena itu, Indonesia memiliki posisi yang penting untuk dapat berkontribusi dalam penyelesaian isu HAM di negara tersebut.

Dalam menyuarakan isu HAM di Korea Utara, sejak tahun 2004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yang merupakan Komnas HAM Korea Selatan telah menyelenggarakan beberapa simposium internasional untuk membangun pemahaman yang sama terkait perbaikan HAM di Korea Utara. Tahun ini, simposium tersebut akan diadakan di Indonesia dan merupakan yang pertama kali di ASEAN. (Rell/Yus/HF)

〈번역본〉

http://www.rii.co.id/post/berita/139151/luar_negeri/lipi_gelar_simposium_bahas_ham_korut.html

인도네시아 학술원(LIPI), 북한의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 69회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학술원(LIPI)은 한국의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국가 인권위원회, 아세안 국가 인권위원회와 공동 협력으로 화요일 자카르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10/2/2015).

인권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 다뤄지는 이슈로 성장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인권 제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몇몇의 독재국가에서 행해지는 반인류적인 행동, 예를 들어 강제추방과 대중학살 등은 이제 극심하게 반대되고 금지되며 교체되고 있다.

“1993년 위나 선언(Wina Declaration)은 인권 문제에 있어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화요일 인도네시아 학술원장 이스칸다르 교수 (Prof. Dr. Iskandar Zulkarnain)가 말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권 문제는 보편화되었다고 이스칸다르 교수는 덧붙였다. 이에 모든 국가들은 종족, 종교, 국적, 국경 등의 문제를 떠나서 인권을 발전시키는 데에 모두 동참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위나 선언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즉시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그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학술원 정치연구소장 아드리아나 박사(Dr. Adriana Elisabeth)는 제 69회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북한 지도자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 속에서 반인류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 일은 유엔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 상황 문제를 ICC에서 다루도록 박차를 가하게 했고, 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닌 측에게 적합한 제재를 가했다,” 라고 그가 설명했다.

그 외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당하는 유엔 특별 보고자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은 한국에 있는 2만7천여명의 탈북자들이 털어놓은 경험담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나치시대 독일에서 벌어진 대중학살,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 등의 조합으로 간주된다,” 라고 그가 첨부했다.

북한은 몇몇의 국가들에게 폐쇄적이거나,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수카르노 정부 이래로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드높이기 위해서 2004년부터 한국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계된 공동의 이해를 세우기 위해 몇 차례의 심포지움을 개최해 왔다. 올해 이 심포지움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것이며 이 행사가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riginal〉

<http://www.tempo.co/read/news/2015/02/10/118641468/Korut-Protes-Pemerintah-Indonesia-Ini-Sebabnya>

Korut Protes Pemerintah Indonesia, Ini Sebabnya

TEMPO.CO, Jakarta -Duta Besar Republik Demokratik Korea (Korea Utara) Ri Jong Ryul, 59 tahun, melayangkan nota diplomatik bernada protes kepada pemerintah Indonesia. Protes ini terkait dengan sikap pemerintah Indonesia yang membiarkan penyelenggaraan simposium internasional membahas mengenai hak asasi manusia rakyat Korut pada Selasa, 10 Februari 2015.

Menurut Ri Jong Ryul, simposium itu yang diselenggarakan oleh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Korea Selatan,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LIPI), dan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Indonesia hanya bertujuan untuk menyebarkan rumors dan permusuhan terhadap Korea Utara.

“Indonesia dan Korea Utara selama ini berhubungan sangat erat. Tolong hentikan pertemuan-pertemuan semacam ini (simposium) untuk menentang negara kami. Kami menghormati harga diri dan kedaulatan negara-negara lain,” kata Ri Jong Ryul di kantornya, Jakarta, Selasa siang, 10 Februari 2015.

Menurut Ri Jong Ryul, nota diplomatik bernada protes sekaligus kecaman terhadap penyelenggara simposium internasional tentang HAM Korut disampaikan ke Kementerian Luar Negeri, Biro Kepresidenan,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dan Interpol.

“Namun hingga simposium digelar pada pukul 11 siang, mereka tidak merespon nota diplomatik kami,” kata Ri Jong Ryul menyesalkan.

Dengan nada kecewa, Duta Besar Korea Utara ini mengingatkan Indonesia, jika pertemuan-pertemuan semacam ini terus dibiarkan oleh pemerintah Indonesia, maka hubungan yang sudah berlangsung baik antar dua negara akan tercederai.

Simposium internasional digelar di Golden Ballroom A, Hotel Sultan, Jakarta pada Selasa siang hingga sore. Simposium menghadirkan sejumlah akademisi dan pelapor khusus Perserikatan Bangsa-Bangsa untuk situasi HAM Korut, Marzuki Darusman. Duta Besar Korea Selatan Cho Tai Young juga hadir di simposium ini.

Rafendi Djamin dari AICHR-Indonesia mengatakan lembaganya berperan sebagai co-host dalam simposium internasional tersebut. “Saya sebagai pembicara dan AICHR-Indonesia sebagai co-host,” kata Rafendi yang dihubungi melalui telepon saat akan berangkat ke Malaysia, Selasa sore, 10 Februari 2015.

Ia membenarkan ada seorang diplomat Korea Utara yang hadir di acara itu dan menggelar konferensi pers membacakan pernyataan protes kepada sejumlah jurnalis yang hadir di simposium. “Saya mendengar Korut kecewa tidak diundang di simposium ini,” kata Rafendi.

MARIA RITA

〈번역본〉

<http://www.tempo.co/read/news/2015/02/10/118641468/Korut-Protes-Pemerintah-Indonesia-Ini-Sebabnya>

북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

TEMPO.CO, Jakarta - 주 인니 북한 대사 리종렬(59세)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항의 성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 항의는 2015년 2월 10일 화요일에 개최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심포지움 행사 개최와 연관된 것이다.

리종렬은 한국 인권 위원회, 인도네시아 국가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학술원, 아세안 국가 인권 위원회 간의 공동 협력으로 주최된 이 심포지움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루머를 형성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지금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부디 이와 같은 회담들(심포지움)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중지 시켜 달라. 우리는 타국가들의 주권과 자존심을 존중한다.”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정오, 자카르타의 집무실에서 리종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종렬은 그가 보낸 외교문서는 항의인 동시에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이 국제 심포지움 개최에 대해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통령궁,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 그리고 인터폴을 대상으로 한 비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오전 11시 이 심포지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외교문서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리종렬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

실망스러운 어조로 북한 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와 같은 회담들을 계속해서 내버려둘 경우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그간 우호적이었던 관계는 손상될 것이라고 인도네시

아 측에 상기시켰다.

이 국제 심포지움은 화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술탄 호텔 골든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에는 많은 학자들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계된 유엔 특별 보고자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주 인니 한국대사 조태영 대사 등이 참석했다.

아세안 국가 인권 위원회 소속 라펜디 자민(Rafendi Djamin)은 그가 속한 기관은 이 국제 심포지움의 공동 주최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 나는 발표자인 동시에 공동 주최자의 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라고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오후 말레이시아로 출발을 앞두고 라펜디는 유선상으로 말했다. 그는 이 행사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이 한 사람 있었으며 그가 심포지움에 참석한 모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에 대한 항의를 발표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북한측이 이 심포지움에 초청을 받지 못해 실망했다고 들었다,” 라고 라펜디는 말했다.

MARIA RITA

〈Original〉

<http://www.tempo.co/read/news/2015/02/10/118641472/Diprotos-Korut-Ini-Jawaban-Pemerintah-Indonesia>

Diprotos Korut, Ini Jawaban Pemerintah Indonesia

TEMPO.CO, Jakarta - Kementerian Luar Negeri Indonesia memastikan telah menerima nota diplomatik dari Kedutaan Besar Korea Utara di Jakarta terkait simposium internasional tentang hak asasi manusia Korea Utara yang digelar di Hotel Sultan, Selasa, 10 Februari 2015.

“Kita memang menerima nota dari Kedubes Korut yg intinya menyampaikan bahwa LIPI, Komnas HAM dan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mengadakan simposium terkait human rights di Korut,” kata juru bicara Kementerian Luar Negeri, Arrmanatha Nasir kepada Tempo.

Menurut Arrmanatha, isi nota diplomatik itu antara lain menyayangkan penyelenggaraan simposium tersebut. Nota diplomatik itu disampaikan oleh pejabat Kedubes Korut. “Wakil dari Direktorat Asia Timur dan Pasifik, Kementerian Luar Negeri menyampaikan bahwa sebagai negara demokrasi kita tidak bisa melarang penyelenggaraan suatu pertemuan bila sudah memiliki izin pelaksanaan pertemuan,” papar Arrmanatha menjelaskan sikap pemerintah Indonesia.

Ketika Tempo menanyakan sikap dan posisi Indonesia di Dewan HAM PBB ketika membahas pelanggaran HAM Korea Utara, Arrmanatha menyatakan sebagai negara demokratis dan menjunjung tinggi nilai-nilai HAM, Indonesia mendorong semua

negara menghormati prinsip-prinsip HAM. “Hal ini kita lakukan dalam berbagai forum baik itu di ASEAN maupun forum internasional lainnya,”katanya.

Dia menambahkan sebagai anggota dewan HAM PBB, Indonesia aktif agar negara negara anggota PBB menghormati HAM dan pelanggaran HAM di selesaikan sesuai dengan mekanisme yang berlaku dalam Dewan HAM.

Sebelumnya Duta Besar Republik Demokratik Rakyat Korea Utara Ri Jong Ryul mengatakan simposium internasional itu hanya bertujuan untuk menyebarkan rumor dan permusuhan terhadap Korea Utara.

“Indonesia dan Korea Utara selama ini berhubungan sangat erat. Tolong hentikan pertemuan-pertemuan semacam ini (simposium) untuk menentang negara kami. Kami menghormati harga diri dan kedaulatan negara-negara lain,” kata Ri Jong Ryul di kantornya, Jakarta, Selasa siang,10 Februari 2015

NATALIA SANTI

〈번역본〉

<http://www.tempo.co/read/news/2015/02/10/118641472/Diprotas-Korut-Ini-Jawaban-Pemerintah-Indonesia>

북한의 항의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반응

TEMPO.CO, Jakarta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술탄 호텔에서 개최된 북한의 인권문제를 토의하는 국제 심포지움에 관련하여 주 인니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외교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물론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외교 문서를 받은 바 있으며, 그 문서의 주된 내용은 인도네시아 학술원, 인도네시아 국가 인권위원회, 아세안 국가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교부 대변인 아르마나따 나시르(Arrmanatha Nasir)는 뎬뽀지에 말했다.

아르마나따에 의하면, 북한 대사관측이 보낸 외교 문서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국제 심포지움 개최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이었다. 이 외교 문서는 북한 대사관의 한 직원이 전달했다. “외교부의 동아시아 태평양국 담당자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행사가 이미 개최 허가를 받았을 시 그 행사의 개최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했다,”라고 아르마나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뎬뽀(Tempo)지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논하는 유엔의 인권의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장과 자세가 어떠한가를 물었을 때, 아르마나따는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의 가치를 매우 존중하며 모든 나라가 인권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을 독려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이를 아세안은 물론이고 다른 국제 포럼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과 자세를 취할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회의의 회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두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회의의 메커니즘에 준하여 인권 침해를 종식 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 인니 북한 대사 리종렬은 이 심포지움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루머를 형성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지금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부디 이와 같은 회담들(심포지움)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중지 시켜 달라. 우리는 타국가들의 주권과 자존심을 존중한다.”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정오, 자카르타의 집무실에서 리종렬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NATALIA SANTI

〈Original〉

<http://dunia.rmol.co/read/2015/02/10/190876/Dubes-Korut-Geram,-Simposium-LIPI-Cuma-Libatkan-Korsel->

Dubes Korut Geram, Simposium LIPI Cuma Libatkan Korsel

Selasa, 10 Februari 2015 , 16:15:00 WIB

Laporan: Amelia Fitriani

RMOL. Acara simposium internasional yang digelar oleh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LIPI) dan Komisi Hak Asasi Manusia Korea Selatan (NHRCK) di Hotel Sultan Jakarta hari ini (Selasa, 10/2) dinilai problematik. Pasalnya, simposium yang mengangkat Hak Asasi Manusia (HAM) Korea Utara sebagai isu utama itu justru tidak ikut melibatkan pihak Korea Utara.

Duta Besar Korea Utara untuk Indonesia Ri Jong-ryul mengaku, pihaknya sebagai perwakilan resmi Korea Utara tidak pernah mendapatkan undangan untuk ikut berpartisipasi dalam simposium tersebut.

“Hari ini digelar simposium soal HAM Korea Utara di Jakarta tanpa melibatkan pihak Korea Utara,” kata Dubes Ri dalam pertemuannya dengan wartawan beberapa waktu lalu di kantor Kedutaan Besar Korea Utara Jakarta (Selasa, 10/2).

Padahal, Dubes Ri menegaskan bahwa pihaknya akan membuka tangan dengan pihak manapun yang hendak berdiskusi atau membahas lebih jauh soal masalah HAM yang sebenarnya terjadi di negaranya.

Karena itu, tidak mengherankan bila ia geram dengan gelaran simposium yang juga menggandeng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AICHR) dan Komnas HAM Indonesia itu. Menurutnya, simposium itu merupakan upaya membangun perspektif internasional soal HAM di Korea Utara.

“Semestinya, kami sebagai perwakilan perlu dilibatkan agar bisa menjelaskan fakta yang sebenarnya terjadi dan juga memberikan perspektif kita dalam acara yang membahas soal isu HAM negara kita itu,” sambungnya.

“Kami meminta agar simposium tersebut dihentikan karena justru hanya memicu konfrontasi,” tegas Dubes Ri sambil menambahkan bahwa pihaknya ingin menjaga hubungan persahabatan dengan Indonesia yang telah lama dibangun.

Perlu diketahui, seperti rilis yang dimuat di situs resmi LIPI, simposium itu merupakan tindak lanjut dari resolusi PBB dalam sidang Umum ke-69 terkait HAM Korea Utara. Dalam simposium itu agenda yang akan dibahas adalah soal kerjasama regional dan internasional untuk perbaikan situasi HAM di Korea Utara. [mel]

〈번역본〉

<http://dunia.rmol.co/read/2015/02/10/190876/Dubes-Korut-Geram,-Simposium-LIPI-Cuma-Libatkan-Korsel->

인도네시아 학술원 심포지움이 한국을 개입시켜 북한 대사 분노

2015년 2월 10일 16:15:00 (서부자바기준시간)

보고서: Amelia Fitriani

RMOL. 오늘 자카르타에 있는 술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학술원과 한국의 인권 위원회가 주최한 국제 심포지움이 문제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움이 정작 당사자인 북한을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주 인니 북한 대사 리종렬은 북한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그가 이 심포지움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오늘 자카르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움이 북한을 개입시키지 않은 채 개최되었다,” 라고 리종렬 대사는 자카르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리종렬 대사는 북한측은 어느 측과도 당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토론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가 이 심포지움이 아세안 국가 인권위원회 및 인도네시아 국가 인권위원회와 나란히 손을 잡은 것에 분노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리종렬 대사는 이 심포지움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을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당초에 우리가 북한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행사에서 당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사실 전모를 직접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행사에 개입되었어야 했다,” 라고 그가 연이어 말했다.

“우리는 이 심포지움이 오직 대립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중지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말하며 리종렬 대사는 북한측은 오래 전부터 구축되어 온 인도네시아와의 친선관계를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학술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바와 같이, 이 심포지움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제69회 유엔총회가 작성한 결의안의 연결 조치라는 것이다. 이 심포지움에서 논의될 의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 문제이다.

〈Original〉

<http://www.koreakini.com/read/2015/02/10/2375/Korut-Heran,-Indonesia-Hanya-Gandeng-Korsel-Bahas-Isu-HAM->

Korut Heran, Indonesia Hanya Gandeng Korsel Bahas Isu HAM

KOREA Selatan dan Indonesia diketahui menggelar sebuah simposium guna membahas langkah-langkah yang tepat dalam penanganan isu HAM di Korea Utara pada hari ini (Selasa, 10/2) di Hotel Sultan Jakarta.

Simposium yang digelar oleh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LIPI) dan Komisi Hak Asasi Manusia Korea Selatan (NHRCK) itu menimbulkan kekecewaan mendalam bagi Korea Utara. Kekecewaan tersebut muncul karena Korea Utara yang merupakan objek dalam simposium tersebut justru tidak diundang untuk berpartisipasi.

Korea Utara juga kecewa dengan sikap Indonesia yang telah dianggap menjadi negara terdekat justru tidak mengambil langkah bijak untuk mengikutsertakan Korea Utara dalam acara tersebut.

“Jika kita membahas tentang permasalahan yang dihadapi suatu negara, kita harus mengundang negara tersebut untuk berbicara, karena itu merupakan cara terbaik dalam mendapatkan sebuah informasi,” kata Duta Besar Korea Utara untuk Indonesia Ri Jong-ryul dalam pertemuan dengan wartawan di kantornya pada Selasa siang (10/2).

Ia menegaskan bahwa selama ini informasi soal isu-isu HAM Korea Utara banyak yang datang dari pihak Barat dan tidak pernah bertanya langsung pada Korea Utara. Tak pelak bila selama ini kerap muncul kesalahpahaman informasi.

Beberapa negara yang turut mendukung tuntutan untuk penegakan HAM di Korea Utara, kebanyakan adalah mereka yang setuju dengan tuntutan Korea Selatan dan Amerika Serikat untuk melakukan perombakan pada sistem ekonomi dan penegakan keadilan di masyarakat Korea Utara.

Dubes Ri menilai, ada beberapa hal yang tidak bisa diintervensi oleh suatu negara, terutama cara mengatur negara. Negara memiliki kewajiban untuk memenuhi hak warga negaranya, namun negara juga berhak mengatur warga negaranya. Karena tujuan negara pasti untuk mensejahterakan rakyatnya. Hal itulah yang dilakukan oleh pemerintah Korea Utara selama ini.

Sebagai negara yang dianggap paling dekat dengan Korea Utara, Dubes Ri berharap agar Indonesia selalu mendukung dan membantu meluruskan isu-isu seputar Korea Utara yang kerap disalahartikan. **[KoreaKini]**

〈번역본〉

<http://www.koreakini.com/read/2015/02/10/2375/Korut-Heran,-Indonesia-Hanya-Gandeng-Korsel-Bahas-Isu-HAM->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나란히 손잡고 인권 문제 논의 하자 북한은 경악.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늘 (2/10, 화요일)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를 논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학술원 및 한국의 인권 위원회가 개최한 이 심포지움은 북한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그것은 이 심포지움의 논의 대상인 북한이 참가요청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어느 한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논의할 경우, 우리는 논의를 위해 해당 국가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보를 얻는 데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 인니 북한 대사 리종렬은 화요일 정오 집무실에서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서구 사회에서 온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에 직접적으로 질문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의 인권을 바로 세우도록 요구하는 데 적극 지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는 국가들이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고 북한의 경제 제도에 변화의 물결을 시도하는 국가이다.

리종렬 대사는 타국가의 간섭이 불가능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를 조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는 자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으나 국가 또한 자국민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의 목표가 자국민의 번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북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리종렬 대사는 북한에게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종종 오해를 받고 있는 북한 문제를 바로 잡는데 항상 도움과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금]

2015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결과자료집

| 인 쇄 | 2015년 3월

| 발 행 | 2015년 3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40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 978-89-6114-415-5 9334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5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결과자료집